



SALIN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2022 년 제 17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의 고려사항 : 수도에 관한 법률 2022 년 제 3 호 제 24 조 제(7)항,
제 25 조 제(3)항, 제 26 조 제(2)항, 제 35 조, 제 36 조 제(7)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행정부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준수조항 : 1.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5 조 제(2)항
2. 국가 재정에 관한 법률 2003 년 제 17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3 년 제 47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4286 호)
3. 국고에 관한 법률 2004 년 제 1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4 년 제 5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4355 호)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 -

4. 국가개발계획 제도에 관한 법률 2004 년 제 25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4 년 제 104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4421 호)
5. 세외 국가수입에 관한 법률 2018 년 제 9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18 년 제 147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 6245 호)
6.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 2022 년 제 1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22 년 제 4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추록 제 6757 호)
7. 수도에 관한 법률 2022 년 제 3 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22 년 제 41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추록 제 6766 호)

에 따라

다음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정부 규정에서

1. 수도는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의 수도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 -

2. 누산타라라는 명칭의 수도(이하, “누산타라 수도”라 한다)는 주 수준의 특별 지역 행정 단위로서, 그 영역은 수도에 관한 법률 2022 년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수도 지역이다.
3. 중앙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부통령과 각료들의 보좌를 받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통치권을 보유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을 말한다.
4.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는 누산타라 수도에서 통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지역 행정을 말한다.
5. 누산타라 특별행정부(이하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라 한다)는 수도를 준비, 건설, 이전하고,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를 조직하는 기관이다.
6. 대통령은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따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을 말한다.
7.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누산타라 특별행정부의 장을 말한다.
8.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은 수도를 준비, 건설, 이전하고,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 계획서를 말한다.
9.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는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통합 계획서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 -

10. 국가 예산(이하, “APBN”(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이라 한다)은 인민대표회의가 승인한 연간 정부 재정 계획을 말한다.
11. 국유 자산(이하, “BMN”(Barang Milik Negara)이라 한다)은 APBN의 지출로 구입하거나 취득한, 또는 기타 적법하게 취득한 모든 물건을 말한다.
12. 지역 보유 자산(이하, “BMD”(Barang Milik Daerah)이라 한다)은 지방 수지 예산의 지출로 구입하거나 취득한, 또는 기타 적법하게 취득한 모든 물건을 말한다.
13. 누산타라 수도 당국 관리 자산(이하, “ADP”(Aset Dalam Penguasaan Otorita Ibu Kota Nusantara)라 한다)은 행정 운영과 무관한 누산타라 수도 지역 내 토지를 말한다.
14. 재산관리자는 정책·지침을 수립하고 BMN 관리를 담당하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을 말한다.
15. 재산사용자는 BMN 사용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16. 재산사용자 대리인은 재산 사용자가 재산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임명하는 업무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17. 수요 계획은 BMN 수요를 자세히 나타내서 과거 물품 조달 내역을 현재 조건과 관련 짓고 장래의 행위 기준으로 삼는 활동을 말한다.
18. 사용은 재산사용자가 관련 기관의 직무 및 기능에 따라 BMN을 관리·운영하며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 -

19. 활용이란 소유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부처, 기관, 업무 부서의 직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BMN 을 활용하거나, BMN을 최적화하는 것(또는 두가지 모두)을 말한다.
20. 임대차는 현금 및/또는 다른 형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가 BMN 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1. 활용 협력은 세외 국가수입 및 기타 자금 조달 자원을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가 BMN 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2. 인프라 제공 협력은 법규에 따라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맥락에서, 인프라 제공을 위해 정부와 사업체가 협력하여 BMN 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전은 BMN 의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24. 교환은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서, 또는 정부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적어도 적절한 가치로 주요 대체품을 물건 형태로 수령하여 이루어지는 BMN 의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25. 매각이란 BMN 의 소유권을 금전 형태로 보상받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6. 목록화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BMN 데이터 수집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27. ADP 관리자는 ADP 관리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을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 -

28. ADP 사용자는 ADP 관리 시행을 담당하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을 말한다.
29. ADP 사용자 대리인은 ADP 사용자가 ADP 사용자 권한의 일부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임명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소속 업무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30. ADP 보유자는 토지 할당이 확정됨에 따라 ADP 관리권을 부여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31. ADP 파트너는 ADP 를 관리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ADP 사용자와 협력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32. ADP 관리는 ADP 의 계획, 할당, 사용, 활용, 보안·정비, 제거, 운영, 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3. ADP 계획은 ADP 의 배분, 설계, 사용, 활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34. ADP 할당은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사용될 ADP 의 일부를 ADP 사용자로부터 ADP 보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5. ADP 사용은 ADP 사용자가 ADP 지정에 따라 ADP 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6. ADP 활용은 ADP 사용자가 ADP 파트너에게 ADP 할당을 제공하지 않고 협력하여 ADP를 활용하거나 최적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 -

37. ADP 제거는 관할 기관의 결정을 통해 ADP 목록에서 ADP 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기 관할 기관은 ADP 사용자가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행정적·물리적 책임으로부터 ADP 사용자를 면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38. ADP 운영은 일련의 ADP 부기, 목록 관리 및 보고 활동을 말한다.
39. ADP 감독은 합의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감독 활동을 말한다.
40. 공공 서비스 기관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내 기관으로서, 수익을 우선하거나 효율성과 생산성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1. 국가 샤리아 증권(이하, “SBSN”(Surat Berharga Syariah Negara)이라 한다)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발행되는 국채로서, 루피아화와 외화 모두로 발행되며, SBSN 자산 참여 지분의 증거가 된다.
42. 국가 증권(이하, “SUN”(Surat Utang Negara)이라 한다)은 루피아화 및 외화로 발생하는 금전차용증서 형태의 유가증권으로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유효기간에 따라 이자 및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
43. SBSN 포워딩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정부가 SBSN 을 발행하여 발생하는 자금을 SBSN 포워딩 수취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SBSN 포워딩 수취인이 상환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 -

44.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맥락상의 정부·사업체 간 협력(이하, “KPBU IKN”이라 한다)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는 맥락에서, 장관, 기관장, 국영 기업 이사,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사전에 확정된 서비스 명세서를 참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프라를 준비하는 데 이뤄지는 정부와 사업체 간 협력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험 분담을 고려하여 사업체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정부 지원은 장관, 부처장, 기관장, 지역 대표, 국영 기업 이사, 지방 소유 기업 이사,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각자의 법률상 권한에 따라 제공하는 재정 지원 또는 기타 형식의 지원으로서,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재정 타당성 및 효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6. 합작 프로젝트 담당자(이하, “PJPK”(Penanggung Jawab Proyek Kerja Sama)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인프라를 제공하고 조직하는 장관, 기관장, 국영 기업 이사,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을 말한다.
47. 인프라는 지역사회가 경제·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비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 -

48. 인프라 제공은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수용력을 늘리거나, 인프라 관리 활동, 인프라 유지 보수를 개선하는 건설 작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49.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시행 사업체(이하, “시행 사업체”라 한다)는 조달 사업체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50. 공공 협의란 PJKK 와 지역사회(이해관계자 등) 간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투명성, 효율성, 회계책임,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51. 정부 부처(이하, “부처”라 한다)은 정부 내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말한다.
52. 기관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따라 또는 기타 법규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부처 제외) 및 기타 예산 사용 기관을 의미한다.
53. 부처장/기관장은 관계 부처·기관에서 예산 사용 및 물품 사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4. 장관은 국가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을 말한다.
55. 기타 당사자는 재산관리자와 재산사용자 외의 당사자를 말한다.
56. 사업체는 유한책임회사, 해외법인, 협동조합 형태의 국영 기업, 지방 소유 기업, 사기업을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 -

57. 국고(國庫)는 국가의 세입을 보관하고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장관이 일반 국고로 지정하는 국가 재산 저장소를 말한다.
58. 예산사용자(이하, “PA”(Pengguna Anggaran)라 한다)는 부처·기관의 예산 사용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59. 예산사용자 대리인(이하, “KPA”(Kuasa Pengguna Anggaran)라 한다)는 예산 사용자(PA)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부처·기관의 예산 사용권을 일부 행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0. 업무 부서는 부처·기관 수준의 조직 단위 또는 지방 정부 조직 단위로서, 부처·기관의 활동을 수행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61. 재원투입권자(이하, “PPK”(Pejabat Pembuat Komitmen)라 한다)은 예산 사용자(PA), 예산 사용자 대리인(KPA)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국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결정 또는 조치를 내리는 공무원을 말한다.
62. 지급지시 서명권자(이하, “PPSPM”(Pejabat Penandatangan Surat Perintah Membayar)이라 한다)는 예산 사용자(PA), 예산 사용자 대리인(KPA)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지급 요청을 확인하고 지급 지시를 내리는 공무원을 말한다.
63. 세입 회계 담당자는 부처·기관의 사무소·업무 부서에서 이뤄지는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 저축, 예치, 관리 및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 -

64. 지출 회계 담당자는 부처·기관의 사무소·업무 부서에서 이뤄지는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 지출 목적의 금전을 수령, 저축, 예치, 관리 및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65. 세출 회계보조자는 지출 회계 담당자를 도와 특정 활동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필요한 지급을 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66. 누산타라 수도 당국 특별세(이하, “IKN 특별세”(Pajak Khusus Otorita Ibu Kota Nusantara)라 한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 기부금으로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주어지지 않으며 국민의 번영을 위해 누산타라 수도를 위해 사용된다.
67. 누산타라 수도 당국 특별비(이하, “IKN 특별비”(Pungutan Khusus Otorita Ibu Kota Nusantara)라 한다)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특별히 부여하는 허가에 대해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68. 누산타라 수도 당국 특별세 대상(이하, “IKN 특별세 대상”(Subjek Pajak Khusus Otorita Ibu Kota Nusantara)이라 한다)는 IKN 특별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9. 누산타라 수도 당국 특별납세자(이하, “IKN 특별납세자”(Wajib Pajak Khusus Otorita Ibu Kota Nusantara)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조세권과 납세 의무를 갖는 납세자, 감세자, 징세자 등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 -

70. 누산타라 수도 당국 의무 특별비(이하, “IKN 의무 특별비”(Wajib Pungutan Khusus Otorita Ibu Kota Nusantara)라 한다)는 특정 IKN 특별비의 징수권을 포함하여, 재화, 서비스, 또는 허가에 대해 법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1. 단체란 사업 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한 단위의 사단 또는 법인을 말한다. 기업, 주식, 협동조합, 연기금, 조합, 협회, 재단, 지역사회 조직, 사회 정치적 조직 또는 기타 조직, 기관 및 다른 형태의 단체(집합 투자 계약 및 항구적 시설 포함)의 명칭과 형태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기타 회사, 국영 기업, 지방 소유 기업, 또는 촌락(village) 소유 기업이 이에 속한다.
72. 타당성 지원이란 장관이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사업에 제공하는 재정 기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말한다.
73. AP(Availability Payment)방식(이하, “Availability Payment”라 한다)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에서 정한 품질 및 기준에 따라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PJKP 가 시행 사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 2 조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자원 및 자금 조달 계획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3 -

- b.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예산 주기에 따른 세입 및 세출 계획 포함)
- c.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 집행 및 회계책임(세입 예산 집행, 세출 예산 집행 및 재무 공무원의 회계책임 포함)
- d. BMN 관리(조달 수요 계획, BMD 및 ADP 취득, 사용, 활용, 보안·정비, 평가, 이전, 파기, 제거, 운영, 지침, 관리·감독 포함)
- e.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 의한 전문적인 자산 관리로서 ADP 관리(ADP의 계획, 할당, 사용, 활용, 보안·정비, 제거, 운영, 관리·감독 포함) 및
- f.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상의 이양

제2장

자금 조달 출처 및 계획

제1절

자금의 출처

제3조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서 조달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4 -

- a. APBN 및/또는
- b.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적법한 출처

제2절
자금 조달 계획

제4조

- (1) 제 3 조 a 호에서 언급한 대로 APBN 에서 조달되는 자금 계획은 다음과 같은 형식일 수 있다.
 - a. 세출 및/또는
 - b. 융자
- (2) 제(1)항 a 호에 따른 세출 형식의 자금 조달에는 세외 국가수입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 (3) 제(1)항 b 호에 따른 융자 형식의 자금 조달에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 (4) 제(3)항에 따른 국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SBSN 및
 - b. 국가 증권(SUN)
- (5) 제 3 조에서 언급한 대로 APBN 및 기타 법적 출처에서 조달되는 자금 계획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자금 계획의 조달처는 다음과 같다.
 - 1. BMN 활용 및/또는 ADP 활용
 - 2. 정부·사업체 협동 계획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이용 및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5 -

3. 기타 당사자의 참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의 배치
 - b) 국유 법인의 역할 강화 및
 - c)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
- b. a호에서 언급한 것 외의 자금 조달 계획
- (6) 제 3 조 b 호에서 언급한 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적법한 출처에서 조달되는 자금 계획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자금 계획의 조달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 기부금
 2. 제(5)항 a 호 3 c)에서 언급한 것 외의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 및
 3.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규정하는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
 - b. a 호에서 언급한 것 외의 자금 조달 계획
- (7) 제(4)항에서 언급한 국가 증권(SUN)을 통한 국채 형식으로 APBN 에서 조달하는 누산타라 수도 자금 조달 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6 -

- (8) 제(5)항 3호 c) 및 제(6)항 2호에서 언급한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은 거래를 준비하고 시행 설비를 마련하는 형식으로 정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9) 제(5)항 a호 3 a)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를 배치하여 누산타라 수도 건설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a. 다음과 같은 지원 형태:
1. 국가 자본의 참여
 2. 정부 투자
 3. 정부 보증 및/또는
 4. 법규에 따른 세금 혜택
- b. a호에서 언급한 것 외의 지원
- (10) 장관은 국가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기타 부처나 기관, 누산타라 수도 당국과 조정한 후 제(5)항 a호 3 c) 및 제(6)항 a호 2에 따른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의 조달처를 결정한다.
- (11) 제(9)항 a호 3에서 언급한 정부 보증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 a. 장관은 APBN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위험 관리를 고려하여 정부 보증을 부여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7 -

- b. 장관은 법규에 따라 사업체의 인프라 보증을 특별 지정하여 정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 c. 피보증 당사자는 APBN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영 기업과 당사자들, 및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시행 사업체를 포함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다. 그리고
 - d.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피보증 당사자인 경우, 부처·기관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며 정부의 상환 청구에서 면제된다.
- (12) 제(11)항에서 언급한 정부 보증에 대한 추가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

- (1) 누산타라 특별행정부의 시행자로서 수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에 대한 국가 증권 및/또는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국가 증권 및/또는 수쿠크는 법규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8 -

제6조

제3조에서 언급한 대로 법규에 따라 APBN 및 기타 법적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a.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 b. 관련 법규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

제3절

국가 우선 프로그램

제7조

- (1) 수도의 준비, 개발, 이전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에서 정한 누산타라 수도 개발 단계 중 적어도 3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2022년부터 최소 10년 간의 정부 업무계획에 대해 국가 우선 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 (2) 누산타라 수도의 준비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자금 조달은 국가전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산관리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재정 부처 내 업무 부서가 수행할 수 있다.

제4절

세의 수입

제8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행정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세입을 징수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9 -

- (2) 세외 수입의 유형 및 비율, 세외 수입에 대한 계획, 시행, 회계책임, 감독 및 조사에 대한 규정은 본 정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세외 수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3) 제(2)항에서 언급한 세외 수입의 시행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지불해야 하는 세외 국가수입의 결정
 - b. 세외 수입의 징수
 - c. 세외 수입의 지급 및 적립
 - d. 미수 세외 수입의 관리
 - e. 지불해야 하는 세외 국가수입의 결정 및 징수
 - f. 세외 수입의 사용 및
 - g. 이의 신청, 권리 포기,
세외 수입 환급의 결정
- (4) 제(3)항 f 호에 따른 세외 수입 사용은 수령한 세외 수입액의 100%까지 승인될 수 있다.
- (5) 사용하지 않은 세외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세외 수입은 APBN 절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 (6) 제(2)항에 따른 세외 수입 감독은 장관 및 내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기관이 수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0 -

- (7) 제(2)항에 따른 세외 국가수입을 집행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세외 국가수입 관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협조할 수 있다.
- (8) 제(6)조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세외 국가수입에 대한 감독은 세외 국가수입 관리 기관, 누산타라 수도 세외 국가수입 관리 기관의 협력기관 및/또는 의무 지급 기관이 수행한다.
- (9) 제(6)조에서 언급한 장관 및 내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기관은 누산타라 수도 세외 국가수입을 감독하는 데 있어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10) 세외 국가수입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차후에 장관으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달받은 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정한다.

제5절

SBSN 발행을 통한 프로젝트/활동 자금 지원

제1관

누산타라 수도 당국 등의 부처·기관을 위한 SBSN 사업 관련 일반 조치

제9조

- (1) 정부는 SBSN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PBN 사업·활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출액을 할당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1 -

- (2) 제(1)항에 따라 SBSN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PBN 사업·활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출액을 할당하는 행위는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맥락에 속한다.
- (3) 제(1)항에 따라 SBSN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PBN 사업·활동을 제안하고, 할당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SBSN 발행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제2관

현 연도에 신규 SBSN 사업·활동을 할당하기 위한 조치

제10조

- (1) 현 회계연도 내 신규 사업·활동의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SBSN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PBN 사업·활동에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출을 할당하려면 다음을 거쳐야 한다.
 - a. 현 예산 연도 내 총 SBSN 할당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관련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 잔여 SBSN 자금 및/또는 잔여 계약상 SBSN을 활용
 - b. 현 예산 연도 내 총 SBSN 할당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현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관련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 SBSN 지출 할당액의 일부를 집행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2 -

- c. 현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관련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 순 루피야화 지출 할당액의 일부를 집행하여, 현 회계연도에 관련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SBSN 할당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 (2) 제(1)항에 따라 현 예산 연도에 할당을 제안할 수 있는 신규 사업·활동은.
 - a.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우선 사업이고/사업이거나
 - b. 법규에 따라 규제되거나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 (3) 제(1)항 b 호 및 c 호에서 언급한 지출액의 집행은 관련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 사업·활동의 집행 시간을 지연하거나 연장하는 형식일 수 있다.
 - (4)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이 법규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SBSN 사업의 우선순위 목록을 변경한 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규 사업·활동을 위해 부처·기관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지출액을 현 회계연도에 할당한다.
 - (5) 제(1)항에 따라 현 회계연도에 신규 사업·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프로젝트 자금 지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SBSN의 최대 한계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3 -

- (6)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SBSN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PBN 사업·활동에 예산을 할당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3관

수도 건설에 대한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의 개발 지원

제11조

- (1)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을 위해 SBSN 을 발행하여 하는 APBN 자금 조달은 지방 자금 조달, 국영 기업, 민간 부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및/또는 기타 자금 조달처와 통합될 수 있다.
- (2)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장관은 SBSN 을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에 포워딩(전달)할 수 있다.
- (3)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부처가 먼저 사업·활동의 시행 준비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SBSN 사업의 우선순위 목록을 확정된 후,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제(2)항에 따른 SBSN 포워딩을 위해 APBN 에 사업·활동 예산을 할당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4 -

- (4) 제(2)항에 따른 SBSN 포워딩의 맥락에서 사업·활동의 시행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이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활동 제안서에 대한 권고 내용에 기반하여 한다.
- (5) 제(2)항에서 언급한 SBSN 포워딩이 장관이 지정한 국영 기업을 통해 정부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예산 할당은 정부 투자에 관한 법규에 따라 한다.
- (6) 제(1)항에 따라 SBSN를 지방 자금 조달, 국영 기업, 민간 부문, KPBU IKN, 및/또는 기타 자금처와 통합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 및 제(2)항에서 언급한 SBSN 포워딩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정부·사업체 협동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

제1관

총칙

제12조

- (1)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의 맥락에서, PJKP는 인프라 제공을 위해 사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은 다음을 통해 이뤄진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5 -

- a. 관련 법규에 따른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 b.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은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 (3) 제(2)항에서 언급한 인프라 제공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a. PJKK 인 장관, 기관장 및/또는 국영 기업 이사는 제(2)항 a 호 또는 b 호에 따른 정부·사업체 협동 계획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적용할 수 있다.
 - b. PJKK 인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2)항 b 호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은 다음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 a. 민간 자금의 참여를 통해, 특히 누산타라 수도의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 수요 지원
- b. 고품질, 고효과, 고효율의 인프라를 목표한 대로 적시에 제공
- c.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인프라 제공 시행 사업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또는
- d. 인프라 제공 시행 사업체의 투자에 대해 수익의 확실성을 제공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6 -

제 14 조

제 12 조 제(2)항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은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a. 파트너십. 즉, 정부와 시행 사업체는 법규 및 양 당사자의 필요가 반영된 요건에 기반하여 협력한다.
- b. 혜택. 즉, 정부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사업체와 함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c. 경쟁. 즉, 시행 사업체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선정 단계를 통해, 그리고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의 원칙을 고려하여 협력 업체를 확보한다.
- d. 위험 통제 및 관리. 즉,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는 동안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위험을 완화한다.
- e. 효과적. 즉,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개발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 f. 효율적. 즉,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7 -

제 15 조

- (1) 본 정부 규정에 기반하여 인프라를 제공하는 맥락에서, 사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누산타라 수도 인프라에는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에 명시된 누산타라 수도 인프라가 포함된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사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누산타라 수도 인프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되며 최소한 아래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업·활동·토지 사용 계획
 - b. 자금 계획의 표시
 - c. 인프라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표시

제 2 관

정부·사업체 협동 사업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담당자

제 16 조

- (1)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시행하는 경우, 장관, 기관장, 국영 기업 이사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각자의 직무와 직책에 따라 PJPK 역할을 수행한다.
- (2) 기존에는 부처·기관이 수행하던 수도 준비 및/또는 개발 업무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PJPK는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8 -

- (3) 제(1)항에 따라 PJPK 로 행위하는 경우, 장관, 기관장, 국영 기업 이사,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프라 제공자 및/또는 시행자로 임명되어 책임을 진다.

제 3 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실행 단계

제 17 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은 다음 단계에 따라 실행된다.

- a. 계획
- b. 준비
- c. 거래
- d. 계약 이행

제 4 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획

제 18 조

- (1) 제 17 조 a 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획은 PJPK 및/또는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립한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 a.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확인
 - b.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확정 및
 - c.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예산 편성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9 -

- (3) 제(2)항 a 호에 따라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PJKK 는 공공 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 (4) 제(2)항 a 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확인은 최소한 다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a. 인프라 제공이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 및 누산타라 수도 국가전략지역의 공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 b. 비용 편익 및 사회 분석
 - c. 가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분석
 - d. 수요 분석(*need analysis*)
 - e. 잠재적 수익 분석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계획
 - f. 사업의 요구 사항을 고려한 공공 협의 결과
 - g. 권고 사항 및 후속 계획

제 19 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이 시행되어 협력 대상 인프라를 결정하는 경우, PJKK 는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을 위한 목표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는지 고려한다.

제 20 조

제 15 조 제(1)항에서 언급한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 및/또는 제 18 조 제(4)항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확인 결과를 기초로 하여, PJKK 는 제 18 조 제(2)항 b 호에서 언급한 대로 KPBU IKN 을 확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0 -

제21조

- (1) 제 18 조 제(4)항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확인 결과는 확인서에 기재된다.
- (2) 제 18 조 제(2)항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획 활동으로 인해 작성된 문서는 전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 (3)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획의 절차와 방식(KPBU IKN 계획안 목록 확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 담당 부처가 장관의 권고를 받은 후 부처 규정을 통해 정한다.

제 5 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예산 편성

제 22 조

제 18 조 제(2)항 c 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예산 편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 a. PJPK 는 법규에 따라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을 계획, 준비, 거래 및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편성한다.
- b. PJPK 는 국가 재정 능력을 참작하고, 장관으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달받은 후,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맥락에서 시행 사업체에게 지급할 투자 수익 자금을 APBN 에 편성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1 -

제6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

제23조

- (1) 제 17 조 b 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는 PJKK 가 다음이 포함된 문서를 엮어서 수행한다.
 - a. 사전 타당성 연구
 - b. 정부 지원 계획 및 정부 보증
 - c. 사업체의 투자 수익에 대한 규정과 절차
 - d. 인프라 사업에 토지가 필요한 경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목적의 토지 이용 가능성
- (2) 제(1)항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과의 합의에 따라 장관이나 사업체, 또는 국제기구·조직이 도울 수 있다.
- (3) 제(2)항에서 언급한 대로 장관이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를 돕는 경우, 이는 정부 지원의 한 형태이다.
- (4) 제(2)항에서 언급한 대로 장관이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를 돕는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24조

- (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준비 문서는 전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 (2)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2 -

- a.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준비 절차·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이 정한다.
- b.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나 국제 기관·조직을 확보하는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한다.

제7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거래

제25조

- (1) 제 17 조 c 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거래는 PJKK가 최소한 다음의 활동을 하면서 수행한다.
 - a. 시행 사업체 확보
 - b.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 서명
 - c. 시행 사업체의 인프라 제공에 대한 자금 조달 완수
- (2) 법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항 a 호에 따른 시행 사업체 확보는 PJKK가 환경 활동 문서 작성, 장소 및 토지 취득 결정, 보증 및 정부 지원 제출, BMN 및/또는 BMD 사용 허가 제출을 완료한 후 수행한다.
- (3) 제(1)항 b호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은 PJKK와 시행 사업체가 서명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3 -

제26조

- (1) 제 25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시행 사업체의 인프라 제공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완수한다.
- a. 제 25 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사업체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에 서명한 후, 시행 사업체는 반드시 KPBU IKN 계약 서명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KPBU IKN 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 b. a 호에서 언급한 자금 확보는 다음의 경우 이행한 것이 된다.
 - 1)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에 자금을 조달할 대출 계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 2) 1)에 언급한 대출금의 일부가 건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출됨
 - c.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에 대한 자금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조달되는 경우, b 호에서 언급한 자금 확보는 다음의 경우 이행한 것이 된다.
 - 1) 인프라 건설 단계 중 한 단계에 자금을 조달할 대출 계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 2) 1)에 언급한 대출금의 일부가 건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출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4 -

- d. a호에서 언급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시행 사업체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행 사업체는 보증 금액을 높여서 PJK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e. d호에서 언급한 기간 연장은 최대 2개월이다.
 - f. e호에서 언급한 연장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시행 사업체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은 종료 선언된다.
 - g. f호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PJK는 시행 사업체를 다시 구할 수 있다.
- (2) 제25조 제(1)항 c호에 따른 자금 조달을 더 빨리 완수하기 위해, 시행 사업체는 인프라 자금 조달 관련 회사 및/또는 정부 투자 관리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금원을 법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3)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거래의 절차·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 담당 부처가 장관의 권고를 받은 후 부처 규정을 통해 정함
 - b. 시행 사업체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5 -

- c.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자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 담당 부처가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조정한 후 정함

제8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의 이행

제27조

- (1) 제 25 조 제(1)항 c 호에 따른 자금 확보가 완수된 경우, 시행 사업체와 PJKP 는 제 17 조 d 호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의 단계를 이행한다.
- (2) 인프라 제공 공사 기간 동안, 시행 사업체는 인프라 제공 공사 결과 보고서를 매 6 개월 마다, 그리고/또는 PJKP 가 요청할 때에 PJKP 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적어도 시행 사업체의 인프라 제공 공사가 갖는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3) 제(1)항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 이행의 절차·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부처가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조정하고, 장관의 권고를 받은 후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6 -

제28조

- (1)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행 사업체는 KPBU IKN 의 자산을 PJPK 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부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1)항에 따른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자산의 이전은 KPBU IKN 계약에서 정한다. 상기 KPBU IKN 계약에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a. 이전되는 자산의 상태
 - b. 자산 이전 절차
 - c. PJPK 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에 중요한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
 - d. 자산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가 없는 상태
 - e. 법률의 규정과 관련 관리체제에 부합하는 한, 자산 이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청구로부터 PJPK 를 면책

제9관

사업체의 투자 수익

제29조

- (1) PJPK는 시행 사업체의 자본비용, 운영비용, 적정 이윤을 결산하는 등 투자 수익 형식을 결정한다.
- (2) 인프라 제공에 대한 제(1)항의 투자 수익은 다음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 a. 이용자들이 관세 형태로 지급(*user payment*)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7 -

- b. *Availability Payment* 및/또는
- c. 기타 법규에 따른 형태

제 30 조

- (1) 제 29 조 제(2)항에서 언급한 대로 시행 사업체의 투자 수익을 이용자들이 관세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PJKP 는 인프라 제공에 대한 초기 관세율을 결정한다.
- (2) 초기 세율 및 조정은 투자 수익에 다음이 포함되도록 설정된다.
 - a. 특정 기간 내 자본비용
 - b. 운영비용
 - c. 적정 이윤의 계산

제 31 조

- (1) PJKP 가 판단하기에 제 30 조 제(2)항에 따른 초기 관세율 및 조정을 시행 사업체의 투자금 전액을 보상할 정도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지불 능력을 기초로 하여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대로 이용자의 지불 능력에 기초하여 관세율을 설정한 경우, 시행 사업체는 제 30 조 제(2)에 따른 투자 수익이 보장되도록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8 -

- (3) 이용자가 지급하는 관세 형태로 투자 수익이 주어지도록 PJPK 가 설정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경우, APBN 에서 조달된 정부 지원이 부분적인 건설 지원, 타당성 지원 및/또는 인프라 보증 지원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제 32 조

- (1) 제 29 조 제(2)항 b 호에서 언급한 *Availability Payment* 를 통해 시행 사업체에게 투자 수익이 주어지는 경우, PJPK 는 시행 사업체가 협력 계약에서 정한 운영 기간 동안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Availability Payment* 자금을 PJPK 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한다.
- (2) 제(1)항에 따라 *Availability Payment* 자금을 예산 편성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한다.
 - a. 시행 사업체의 자본 비용
 - b. 운영비용 및/또는
 - c. 적정 이윤

제 33 조

- (1) 사업 타당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Availability Payments* 를 통해 투자 수익이 주어지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사업은 APBN 에서 조달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프라 보증, 부분 건설 지원, 및/또는 타당성 지원의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9 -

제 34 조

- (1) PJKK 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시행 사업체에게 *Availability Payments* 를 지급한다.
 - a. 협력 대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 b. PJKK 는 해당 인프라가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계약에서 정한 인프라 서비스 지표를 충족한다고 명백히 표명했다.
- (2) *Availability Payments* 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 10 관

정부·사업체 협동 개시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제 35 조

- (1) PJKK 는 정부·사업체 협동 계획(KPBU IKN)을 통해 사업체와 협력할 인프라의 제공을 개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PJKK 에게 정부·사업체 협동 개시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신청할 수 있다.
- (3) 사업체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프라 제공을 개시할 수 있다.
 - a.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에 열거되어 있음
 - b. 경제적·재무적 능력을 갖췄음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0 -

- c. 개시를 제안하는 사업체가 인프라 준비 시행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추
- (4) 개시하는 사업체는 그가 제안하는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36조

- (1)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개시하는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대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a. 10%의 추가 가격 부여
 - b. 개시 사업체에게 최적 입찰자에 대한 제의권(매칭권) 부여 또는
 - c. PJKP 나 조달 절차의 낙찰자가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개시권(그에 수반하는 지식 재산권 포함)을 매수
- (2) 제(1)항에 따른 보상 규정은 PJKP 의 승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 개시 사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수령한 경우, 모든 타당성 연구 및 지원 문서(그에 수반하는 지식 재산권 포함)는 PJKP 의 소유로 이전된다.
- (4) PJKP 는 해당 타당성 연구 및 지원 문서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1 -

제37조

- (1) 사업체가 개시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 보증이 부여될 수 있다
- (2) 사업체가 개시한 정부·사업체 협동 또는 KPBU IKN의 시행 사업체의 투자 수익은 법규에 따라 이용자들이 관세 형태로 지급하여 조달되거나 *Availability Payments*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제11관

정부 지원

제38조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 부처장, 기관장, 지역 대표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사업상 필요와 권한에 따라 정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

제38조에서 언급한 정부 지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부처, 기관, 지방 정부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지원 및/또는
- b.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장관이 제공하는 지원으로 다음의 형식에 따른 것.
 - 1)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거래의 준비 및 이행 시설
 - 2) 타당성 지원
 - 3) 세금 혜택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2 -

- 4) 정부 보증 및/또는
- 5) BMN 활용

제40조

- (1) 제 39 조 b 호 4)에서 언급한 정부 보증은 인프라 보증 사업체가 단일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인프라 보증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single window policy*).
- (2)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제 39 조 a 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형태와 그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관, 기관장, 지역 대표,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정한다. 또한
 - b. 제 39 조 b 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형태와 그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41조

- (1) 누산타라 수도 내 인프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투자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은 인프라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기업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프라 자금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인프라 공급 자금 조달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 및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조정한 후 부처 규칙으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3 -

제7절
IKN 특별세 및 특별비

제42조

- (1)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누산타라 수도에서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의 지위, 기능, 역할이 자카르타 특별수도권에서 누산타라 수도로 이전된 후에 시행한다.
- (3) 법규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 부담금은 누산타라 수도 내 IKN 특별세 및 특별비에 준용된다.
- (4) 제(1)항에 따라 IKN 특별세 및 특별비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정한다.

제1관
IKN 특별세

제43조

제42조에서 언급한 대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IKN 특별세 유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자동차세
- b. 차량 명의 이전세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4 -

- c. 중장비세
- d. 자동차연료세
- e. 지표수세
- f. 담배세
- g.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축세
- h.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
- i. 다음과 같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 1. 식음료
 - 2. 전력
 - 3. 접대 서비스
 - 4. 주차 서비스 및
 - 5.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j. 광고세
- k. 지하수세
 - 1. 비금속 암석 광물세 및
- m. 제비집세

제44조

제43조 a호에서 언급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법규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지역에 등록되어야 하는 자동차류의 소유권 및/또는 처분권이다.
- b. 대상은 자동차류를 소유 및/또는 처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자동차류를 소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d. 관세는 다음과 같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5 -

1. 첫번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경우, 최대 2%이다.
2. 두번째 이후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경우, 점진적으로 최대 10%까지 결정될 수 있다.
3. 대중교통, 직원 출퇴근, 학교 통학, 구급차, 소방차, 사회·종교적 용도, 사회·종교 기관, 정부 및 누산타라 수도 당국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경우, 최대 0.5%로 정한다.

제45조

제43조 b호에서 언급한 차량 명의 이전세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법률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지역에 등록되어야 하는 자동차류의 첫번째 양도이다.
- b. 대상은 자동차류를 양수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자동차류를 양수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또한
- d. 관세는 최대 20%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6 -

제 46 조

제43조 c호에서 언급한 증장비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증장비의 소유권 및/또는 처분권이다.
- b. 대상은 증장비를 소유 및/또는 처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증장비를 소유 및/또는 처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또한
- d. 관세는 최대 0.2%로 정한다.

제47조

제43조 d호에서 언급한 자동차연료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자동차 연료 공급자가 소비자나 자동차류 사용자에게 자동차 연료를 인도하는 것이다.
- b. 대상은 자동차 연료 소비자이다.
- c. 납세자는 자동차 연료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d. 관세는 다음과 같다.
 - 1. 최대 10%로 정한다. 또한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7 -

2. 공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자동차연료세 세율은 개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연료세 세율의 최대 50%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43조 e호에서 언급한 지표수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지표수의 추출 및/또는 활용이다.
- b. 대상은 지표수를 추출하고(하거나) 활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지표수를 추출하고(하거나) 활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또한
- d. 관세는 최대 10%로 정한다.

제49조

제43조 f호에서 언급한 담배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담배 소비이다.
- b. 대상은 담배 소비자이다.
- c. 납세자는 소비세 대상 상품에 대한 사업체 번호의 형식으로 허가를 보유하는 담배 공장 회사·제조업체 및 담배 수입업체이다. 또한
- d. 관세는 담배 소비세의 10%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8 -

제50조

제43조 g호에서 언급한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축세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농업, 임업, 광업 활동에 사용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간척 또는 준설 작업으로 인한 지표면을 포함하여 사인이 소유, 처분, 활용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이다.
- b. 대상은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있고/있거나 토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 및/또는 건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처분권이 있고/있거나 건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있고/있거나 토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 및/또는 건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처분권이 있고/있거나 건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그리고
- d. 관세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0.5%로 정한다. 또한
 2. 식량과 가축 생산을 위한 토지인 경우, 다른 토지 보다 낮은 관세가 정해진다.

제51조

제43조 h호에서 언급한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 취득이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9 -

- b. 대상은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사인이다.
- c. 납세자는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사인이다.
- d. 관세는 최대 5%로 정한다.

제52조

제43조 i호에서 언급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세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다음의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양도 및/또는 소비이다.
 - 1. 식음료
 - 2. 전력
 - 3. 접대 서비스
 - 4. 주차 서비스 및
 - 5.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b. 대상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자이다.
- c. 납세자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 전달, 및/또는 소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d. 관세는 다음과 같다.
 - 1. 최대 10%로 정한다.
 - 2.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술집, 증기욕·스파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세는 특별히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정한다. 그리고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0 -

3. 전력에 대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세는 특별히 다음에 따른다.
 - a) 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외부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 최대 3%로 정한다. 그리고
 - b) 자가발전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 최대 1.5%로 정한다.

제53조

제43조 j호에서 언급한 광고세는 지방세 범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모든 광고이다.
- b. 대상은 옥외 광고판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옥외 광고판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그리고
- d. 관세는 최대 25%로 정한다.

제54조

제43조 k호에서 언급한 지하수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지하수의 추출 및/또는 활용이다.
- b. 대상은 지하수를 추출하고(하거나) 활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1 -

- c. 납세자는 지하수를 추출하고/추출하거나 활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또한
- d. 관세는 최대 20%로 정한다.

제55조

제43조 1호에서 언급한 비금속 암석 광물세는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비금속 암석 광물의 채취 활동이다.
- b. 대상은 비금속 암석 광물을 채취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비금속 암석 광물을 채취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d. 관세는 최대 25%로 정한다.

제56조

제43조 m호에서 언급한 제비집세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목적물은 제비집의 채취 및/또는 양식이다.
- b. 대상은 제비집을 채취 및/또는 관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c. 납세자는 제비집을 채취 및/또는 양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또한
- d. 관세는 최대 10%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2 -

제57조

- (1) 제 43 조부터 제 56 조까지의 IKN 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규정 초안을 국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및 부처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받는다.
- (2) 국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및 부처장이 검토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규정 초안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 (3) 제(2)항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IKN 특별세 부과와 관련된 누산타라 수도 당국 규정을 명문화한다.
- (4) 제 44 조부터 제 56 조까지의 IKN 특별세 유형은 다음의 경우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a. 징수 가능성이 불충분하고/불충분하거나
 - b.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징수하지 않기로 정책을 정하는 경우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3 -

제2관
IKN 특별비

제58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법규에 따라 지방 분담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IKN 특별비 유형
- (2) 제(1)항의 IKN 특별비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반하여 발생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공공 서비스
 - b.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제공)
 - c. 특정 허가 부여
- (3) IKN 특별비의 목적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IKN 특별비 지급자들에게 재화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제공)하고 특정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59조

- (1) 제 58 조 제(2)항의 공공 서비스는 다음의 유형으로 제공된다.
 - a. 보건 서비스
 - b. 청소 서비스
 - c. 공공 도로 가장자리의 주차 서비스
 - d. 시장 서비스 및/또는
 - e. 교통 관리
- (2) 제(1)항의 서비스 유형에는 다음의 경우 IKN 특별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 a. 승인 가능성이 적고/적거나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4 -

- b. 국가 정책 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3) 제 5 조 제(2)항 b 호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도매 시장, 상점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b. 경매 환경 내 기타 시설을 포함하여 어류, 가축, 농산물 및 임산물을 경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c. 노외 특별 주차 공간 제공
 - d. 숙박/리조트/ 별장 제공
 - e. 도축장 서비스
 - f. 향만 서비스
 - g. 레크리에이션, 관광, 스포츠 서비스
 - h. 수상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상품을 전달하는 서비스
 - i.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사업 제품 판매 및/또는
 - j.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관리하는 자산을 활용하는 행위, 및/또는 법규에 따른 소유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관리하는 자산을 최적화하는 행위
- (4) 제 58 조 제(2)항 c 호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5 -

- a. 건축 승인
 - b. 외국인 노동자 사용 및/또는
 - c. 지역 채굴 관리
- (5) 제(4)항 a 호의 건축 승인에 대한 IKN 특별비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건축 승인 발행에 대한 비용이다.
- (6) 제(4)항 b 호의 외국인 노동자 이용에 대한 IKN 특별비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 구역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승인 받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 보상 기금이다.
- (7) 제(4)항 c 호의 지역 채굴 관리에 대한 IKN 특별비는 지역 채굴 허가 소지자에 대한 지역 채굴 수수료 형태의 비용으로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징수할 수 있다.
- (8)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언급한 것 외의 추가적인 서비스 유형은 정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3관

IKN 특별비 관세

제60조

- (1) IKN 특별비 관세는 지불해야 하는 IKN 특별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결정되는 루피아화 가치이다.
- (2) 제(1)항의 IKN 특별비 관세는 IKN 특별비 관세를 결정하는 원칙과 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는 달리 결정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6 -

- (3) 제(1)항의 IKN 특별비 관세는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제4관
IKN 특별세 및 IKN 특별비 징수 절차

제61조

- (1)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 IKN 특별세 및 IKN 특별비 관련 규정의 경우, 지방세 및 지방 부담금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조정한다.
- (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 부담금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IKN 특별세 및 IKN 특별비 관련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과세 기준
 - b. 과세 목적물, 과세 대상 및 납세자의 면제
 - c. 납세 기한
 - d. 납세 장소
 - e. 과세년도 및 과세 기간
 - f. 특별비 관세 설정의 원칙 및 목적
 - g. 특별비 관세 산정 절차
- (3)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 징수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7 -

제5관

구제, 감면 및 면제 부여

제62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에 대한 원금 및/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제, 감면, 면제 및 연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구제, 감면, 면제 및 연기 조치는 누산타라 수도 IKN 특별세 납세자, IKN 특별비 지급자, 및/또는 IKN 특별세 목적물과 IKN 특별비의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절

기타 자금 조달 계획

제63조

국영 기업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는 국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64조

순수 민간 계획은 순수 민간 부문의 투자로서 법규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제65조

- (1) 제4조에 따른 세출 및/또는 금융 형태의 자금 조달 계획은 다음의 유형일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8 -

- a. 보조금 수령 및/또는
 - b. 대출 조달
- (2) 제(1)항의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금 공급 제도인 국제 자금·금융 지원 제도가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및/또는 구제금융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및 스마트 누산타라 수도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양자·다자 기관의 자금 제공이 포함된다.
 -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령 및 대출 조달 절차는 법규에 따른다.

제3장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1절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제66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예산사용자(PA) 내지 재산사용자로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67조

- (1) 본 정부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부처·기관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정부 규정을 지침으로 삼아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9 -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세입 및 세출 계획을 포함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한다.
- (3)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입에는 법규에 따른 세외 수입 및/또는 기타 법적 출처 및/또는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가 포함된다.
- (4) 누산타라 수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는 세입 계획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세입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추정치이다.
- (5) 제(2)항의 세입 계획은 장관의 검토를 받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68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다음에 기반하여 세출 계획을 구성한다.

- a. 핵심 성과 지표
- b. 수입 변동 및
- c. 우수 세출 원칙의 적용

제69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예산 용자(PA) 내지 재산사용자로서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누산타라 수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 a.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
 - b. 국가 중기적 개발계획
 - c. 정부 업무계획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0 -

- d. 예산 상한 및
- e. 원가 표준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 작성은 반드시 다음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 a. 중기적 지출 체계
 - b. 통합 예산 편성 및
 - c. 성과 기반 예산 편성
- (3)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 작성은 다음의 지표를 이용하여 한다.
 - a. 성과 지표
 - b. 원가 표준 및
 - c. 성과 평가

제70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다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a. 예산 세부 사항 및
 - b. 성과 정보
- (2) 제(1)항 a 호에 따른 예산 세부 사항은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a. 프로그램
 - b. 활동
 - c. 산출량
 - d. 자금 조달 출처
- (3) 제(1)항 b 호에 따른 성과 정보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a. 결과물
 - b. 산출량
 - c. 성과 지표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1 -

제71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 69 조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 (2)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 검토는 다음의 인물이 수행한다.
 - a.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부처·기관의 업무계획과 정부의 업무계획을 이용하여 부처·기관의 업무계획 및 예산 목표 달성이 적절한 지 검토하는 자, 및
 - b. 부처·기관의 우수 세출 원칙을 활용하여 부처·기관의 업무계획 및 예산 목표가 적절한 지 검토하는 부처장.
- (3) 제(2)항에 따라 검토된 누산타라 수도 당국 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APBN 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부처·기관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더불어 재무 기록 및 지원 문서와 함께 하나로 엮어야 한다.
- (4) APBN 에 관한 법률 초안과 재무 기록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와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관은 합의에 따른 예산 할당액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및 기타 부처·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2 -

- (5)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APBN 에 관한 법률 초안과 재무 기록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와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에 따르는 예산 할당액을 토대로 누산타라 수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조정한다.
- (6) 장관과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장관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과 함께 예산 할당액을 토대로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한다.
- (7)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예산사용자로서 그가 관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 (8) 제(7)항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어느 기관을 지정하여 내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작성하기 위해,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 a. 부처·기관 및 누산타라 수도의 협력 지역과 협업하고
- b. 지역 대표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3 -

제73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전년도 및 현 회계연도의 누산타라 수도 당국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시행 성과를 평가한다.
- (2) 제(1)항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당국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는 국가재정 담당 장관 및 국가개발계획 담당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절

예산 집행 문서

제74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 71 조 제(6)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APBN 세부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을 참고하여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 부문에 대한 예산 집행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 집행 문서에는 달성 목표, 목적, 프로그램 및 활동 세부 사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자금 인출 계획 및 예상 수입이 기술되어 있다.
- (3) 장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12 월 31 일까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 집행 문서를 승인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4 -

- (4)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제(3)항에 따라 장관이 승인한 예산 집행 문서를 근거로 하여 APBN에서 조달되는 자금을 인출한다.

제3절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안 수정 방식

제75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수정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 및 예산안 수정은.
- a. 다음으로 인해 한다.
 - 1.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이 변경되어 시행 요건이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의 세외 수입 초과 사용
 - 3. 수입 변동 및/또는
 - 4. 관리·감독 결과
 - b. 기타 a 호에 언급한 것 외의 사유가 있을 때 한다.
- (3)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업무계획 및 예산안 수정 절차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제출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5 -

제4장
예산 집행 및 회계책임
제1절
총칙

제76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의 집행 및 회계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누산타라 수도 당국 세입 예산 집행
- b.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 집행
- c. 예산 회계책임

제2절
재무 공무원

제77조

재무 공무원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자가 포함된다.

- a. 예산사용자(PA)
- b. 예산사용자 대리인(KPA)
- c. 재원투입권자(PPK)
- d. 지급지시 서명권자(PPSPM)
- e. 세입 회계담당자 및
- f. 세출 회계담당자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6 -

제78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직무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에 대한 예산사용자(PA)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나아가 국가 재정 관련 법규에 따라 그가 책임지는 예산의 집행을 통제한다.
- (3)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예산사용자(PA)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 부서장을 예산사용자 대리인(KPA)으로 임명할 권한 및
 - b. 다른 재무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
- (4) 제(3)항 b 항에 따라 예산사용자(PA)가 갖는 재무 공무원 임명권은 예산사용자 대리인(KPA)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

제77조 c호 및 d호의 누산타라 수도 당국 재무 공무원은 예산사용자 대리인(KPA)이 결정한다.

제80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내 업무 부서에 대한 세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77조 e호의 세입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7 -

제81조

제80조에 따른 세입 회계담당자 임명권은 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

- (1)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세입 회계담당자 임명은 재무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세입 회계담당자 임명 방식은 법규에 따른다.

제83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내 업무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77조 f호의 세출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4조

제83조에 따른 세출 회계담당자 임명권은 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

- (1)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세출 회계담당자 임명은 재무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8 -

- (2) 제(1)항에 따른 세출 회계담당자 임명 방식은 법규에 따른다.

제86조

- (1) 세출 예산 집행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 부서장은 세출 회계보조자를 임명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세출 회계보조자 임명 방식은 법규에 따른다.

제87조

- (1) 세입 회계담당자 및 세출 회계담당자는 공무원 직책이다.
- (2) 세입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보조자로 임명될 공무원이나 직원은 반드시 장관이나 지정된 공무원이 발생한 재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제88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사용자 대리인(KPA), 채용투입권자(PPK), 지급지시 서명권자(PPSPM), 세입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보조자는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이 맡는다.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업무 부서장이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이 아닌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예산사용자(PA)로서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다른 자를 예산사용자 대리인(KPA)으로 임명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9 -

- (3) 제(1)항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사용자 대리인(KPA), 재원투입권자(PPK), 지급지시 서명권자(PPSPM), 세입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담당자, 세출 회계보조자를 임명하는 방식은 법규에 따른다.

제89조

- (1)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 88 조에 따른 예산사용자 대리인(KPA), 재원투입권자(PPK) 및 지급지시 서명권자(PPSPM)는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이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구성원이 아닌 자를 예산사용자 대리인(KPA), 재원투입권자(PPK) 및 지급지시 서명권자(PPSPM)로 임명하려면.
- 필요한 역량 기준 및/또는 인증을 충족해야 함
 - 반드시 재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법규에 따라 임명해야 함

제3절
세입 예산 집행

제90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입은 다음으로부터 현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 BMN의 활용 및/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관리 자산의 활용
 - BMN 이전
 - IKN 특별세 및/또는 특별비 IKN
 - 기타 당사자와의 협력 결과물 및/또는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0 -

- e. 법규에 따라 적법한 누산타라 수도의 기타 세입
- (2) 제(1)항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91조

제90조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입은 법규에 따라 국가 세입 시스템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다.

제92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다음의 형태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a. 계획 보조금 및/또는
 - b. 직접 보조금
- (2) 제(1)항 a 호에 따른 계획 보조금 수령 절차는 보조금 수령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 (3) 제(1)항 b 호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다음의 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
 - a.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현금
 - b.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및/또는
 - c. 증권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1 -

- (4) 제(3)항에 따라 직접 보조금으로서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거나, 재화와 서비스 및/또는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식 및 이에 대한 회계책임은 보조금 수령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정한다.

제4절
세출 예산 집행

제93조

- (1) 제 90 조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 당국 수입은 제 8 조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으면 세출로 집행할 수 있다.
- (2) 세외 수입금을 사용하여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세출을 집행하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최대 지출 한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제(1)항에서 언급한 대로 세외 수입금을 사용하여 세출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 부서의 예산 집행 항목 목록상 세외 수입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4) (2) 제(1)항에 따른 세출의 지급 및 관리는 세외 수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집행하는 세출과는 분리하여 별도로 수행한다.
- (5) 지출 최대 한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 회계연도 종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세외 수입금은 예산 집행 항목 목록을 수령한 후 다음 회계연도의 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2 -

제94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a. 제 92 조 제(1)항 a 호에 따른 계획 보조금 및/또는
 - b. 제 92 조 제(3)항 a 호에 따른 현금 형태의 직접 보조금
- (2) 제(1)항 a 호 및 b 호에 따른 세출 예산 집행은 보조금 수령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5절

회계책임

제95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APBN 집행 관련 거래사항 및 누산타라 자본 당국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재무사항을 회계처리하고 그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재무 보고서는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3) 제(1)항에 따른 재무 보고서는 법규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한다.
- (4) 제(1)항에 따른 재무 보고서는 APBN의 회계책임을 위한 중앙 정부의 회계 시스템 및 중앙 정부의 재무 보고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3 -

(5) 제(1)항에 따른 재무 보고서는 법규에 따라 외부 감사자가 감사한다.

제96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법규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및 회계책임에 대한 내부 통제를 시행한다.

제97조

본 정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의 집행 및 회계책임은 APBN의 집행 및 회계책임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98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의 집행 및 회계책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BMN 관리

제1절

총칙

제1관 대상

제99조

- (1) BMN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APBN을 지출하여 구매하거나 취득한 물건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4 -

- b. 기타 적법하게 취득한 물건
- (2) 제(1)항 b 호에 따른 물건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취득한 물건
 - b.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물건
 - c. 법규에 따라 취득한 물건
 - d.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에 따라 취득한 물건

제100조

제99조에 따른 BMN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자카르타 특별수도권의 부처·기관 또는 다른 주의 부처·기관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수도 이전에 따라 장관에게 이전된 BMN 및
- b. 누산타라 수도 내 BMN

제2관
BMN 관리 공무원

제101조

- (1) 재무 장관은 재산관리자이다.
- (2) 장관은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5 -

- a.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의 부처·기관이 이전할 BMN 목록에 대한 조사와 검증 수행
 - b.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의 부처·기관이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BMN 목록 작성
 - c.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의 부처·기관이 이전한 BMN 관리(부처·기관에 의한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용도 재조정 포함)
 - d.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의 부처·기관이 이전한 BMN의 활용 및/또는 이전
 - e.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의 활용 및/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체를 파트너 및/또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임명
 - f.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제안하는 누산타라 수도 내 상품 표준 및 BMN 니즈 수준에 대한 조사 및 승인
 - g. 누산타라 수도 영역 내 위치하는 BMN의 이용 상황 확인
 - h. 기타 다른 형태의 BMN 활용 확인 및
 - i.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 기타 책임의 이행 및 권한의 행사
- (3)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특정 책임 및 권한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이전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6 -

- (4) 제(3)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특정 책임과 권한 및 그 이전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2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그가 관리하는 BMN 에 대한 누산타라 수도 내 재산사용자이다.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a. BMN 관리에 관한 법규를 참고하여 그가 관리하는 BMN 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수립하고 상세한 지침을 규정
 - b. 재산사용자 대리인의 결정 및 BMN 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공무원의 임명
 - c. 관련 기술 기관의 장과 조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누산타라 수도 내 상품 표준 및 BMN 니즈 수준 판단
 - d. 부처·기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BMN 니즈 및 예산 편성안 제출
 - e. 법규에 따른 BMN 조달
 - f. 누산타라 수도 내 위치하는 국유 자산(BMD)의 이전을 수취
 - g. 그가 관리하는 BMN 의 이용 상황 결정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7 -

- h. 부처·기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관리하는 BMN 을 이용
 - i. 그가 관리하는 BMN 의 확보 및 유지
 - j. 그가 관리하는 BMN 의 활용 제안을 장관에게 제출
 - k. 그가 관리하는 BMN 의 이전 제안을 장관에게 제출
 - l. 부처·기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 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가 활용하지 않는 BMN 을 장관에게 제출
 - m. 그가 관리하는 BMN 의 파기 및 제거 제안을 장관에게 제출
 - n. 그가 관리하는 BMN 이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통제 수행
 - o. 그가 관리하는 BMN 의 기록 및 목록 작성
 - p. 그가 관리하는 반 년별 사용자 상품 보고서 및 연간 사용자 상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
 - q.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재산사용자로서 기타 책임의 이행 및 권한의 행사
- (3)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정 책임 및 권한의 일부를 재산사용자 대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8 -

- (4) 제(3)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및 그 이전 절차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BMN 관리에 관한 법규를 참고하여 정한다.
- (5) 제(3)항의 재산사용자 대리인은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그가 이끄는 사무실 환경을 위해 BMN 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 b. 그가 관리하는 BMN 의 이용 상황 결정 신청서를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 c. 그가 관리하는 BMN 의 기록 및 목록 작성
 - d. 정부의 직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관리하는 BMN 을 이용
 - e. 그가 관리하는 BMN 의 확보 및 유지
 - f. 그가 관리하는 BMN 의 활용 및 이전 제안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 g. 정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 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가 활용하지 않는 BMN 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 h. 그가 관리하는 BMN의 파기 및 제거 제안을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9 -

- i. 그가 관리하는 BMN 이용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수행
- j. 그가 관리하는 반 년별 사용자 대리인 상품 보고서 및 연간 사용자 대리인 상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에게 제출
- k.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재산사용자 대리인으로서 기타 책임의 이행 및 권한을 행사

제103조

- (1) 부처장/기관장은 재산사용자이다.
- (2) 부처장/기관장은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a. 장관에게 이전될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목록 작성 및 편찬
 - b. 장관에게 이전되는 BMN 과 관련된 토지 및/또는 건물 외의 BMN 의 양도
 - c.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을 장관에게 이전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0 -

d.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 기타 책임의 이행 및 권한의 행사

제104조

- (1) 부처장/기관장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에 위치하는 BMN 에 대한 재산사용자가 될 수 있다.
 - a. BMN 은 다음 부문과 관련된다.
 1. 방위 및 안보
 2. 외교 정책
 3. 국무장관
 4. 사법 및
 5. 재무
 - b. 누산타라 수도를 지원하는 부처·기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맥락에서,
 - c. 누산타라 수도 내 BMN 효과의 맥락에서, 그리고/또는
 - d. 법규의 시행
- (2) 부처장/기관장을 제(1)항에서 언급한 누산타라 수도의 재산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은 재산관리자로서의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1 -

제2절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과 관련하여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관리

제1관 총칙

제105조

- (1)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수요 계획 및 예산 편성
 - b. 조달
 - c. 이용
 - d. 양도 및 이전
 - e. 활용
 - f. 보안·정비
 - g. 평가
 - h. 이동
 - i. 파기
 - j. 제거
 - k. 운영 및
 1. 지도, 관리·감독
- (2) 제(1)항 d호에 따른 양도 및 이전, 제(1)항 e호에 따른 활용, 제(1)항 h호에 따른 이동에 관한 절차는 본 정부 규정을 따른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2 -

- (3) 제(1)항 a호에 따른 수요 계획 및 예산 편성, 제(1)항 b호에 따른 조달, 제(1)항 c호에 따른 이용, 제(1)항 f호에 따른 보안·정비, 제(1)항 g호에 따른 평가, 제(1)항 i호에 따른 과기, 제(1)항 j호에 따른 제거, 제(1)항 k호에 따른 운영, 제(1)항 l호에 따른 지도, 관리·감독에 관한 절차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 (4)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관리는 장관 및 부처장/기관장이 자신의 직무와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제2관

BMN 양도 및 이전

제106조

- (1) 수도 이전과 관련된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은 반드시 장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BMN 관리 이전은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BMN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 (3) 제(1)항에 따른 BMN 에는 다음의 BMN 이 포함된다.
 - a. 토지 및/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 및/또는 건물 이외의 형태의 BMN 에 더해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3 -

- b.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BMN 및
- c. 소유권 분쟁 중에 있지 않은 BMN

제107조

- (1) 장관은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활용 방안을 작성해서 명문화해야 한다.
- (2) 제(1)항의 BMN 활용 방안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활용 대상 BMN
 - b. BMN 활용 형태 및
 - c. BMN 활용 일정표
- (3) 제(1)항에 따른 BMN 활용은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 (4)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활용을 재편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른 BMN 활용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8조

- (1) 부처장/기관장은 제106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르면서 BMN 목록을 작성한다.
- (2) 제(1)항의 목록을 기초로 하여, 부처장/기관장은 이전될 BMN 제안서의 목록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4 -

제109조

- (1) 장관은 제 108 조 제(2)항의 제안서 목록 내 BMN 를 조사하고 검증한다.
- (2) 제(1)항의 조사 및 검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관은 부처장/기관장이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BMN 의 목록을 명문화한다.
- (3) 부처·기관은 제(2)항의 BMN 목록을 기초로 하여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에 있는 BMN 의 사용, 유지보수, 제거를 계획한다.
- (4) 제(1)항의 조사와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제안된 BMN 이 제 106 조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BMN 은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부처장/기관장에 계속하여 관리한다.

제110조

- (1) 부처장/기관장은 다음이 완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BMN 을 이전한다.
 - a. 부처·기관의 업무 부서가 담당하던 직무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를 근거로 하여 누산타라 수도로 이전됨
 - b. 장관에 의한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사용 재편
- (2) 제(1)항의 BMN 이전 기간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5 -

- (3) 제(2)항의 BMN 이전 기간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a. 부처·기관 업무 부서의 이전 일정
 - b. 부처·기관의 BMN 사용에 대한 재산사용자의 재편
 - c. 이전될 BMN 이 제 106 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또는
 - d. 재산관리자가 정하는 기타 사항
- (4) 제(1)항에 따른 BMN 이전에 앞서, 부처장/기관장은 이전되는 BMN 과 관련된 토지 및/또는 건물 이외의 BMN 을 완전히 정리한다.
- (5) 제(1)항에 따른 BMN 이전은 이전 기록 문서에 명시한다.
- (6) 제(5)항의 이전 기록 문서를 기초로 하여, 부처장/기관장은 장관에게 이전된 토지 및/또는 건물 BMN 을 재산사용자의 BMN 목록에서 제거한다.
- (7) 장관은 각 부처·기관의 BMN 관리 성과를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전의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제111조

- (1) 제 110 조 제(4)항에 따른 토지 및/또는 건물 이외의 BMN 은 다음을 통해 정리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6 -

- a. 동일한 부처·기관의 재산사용자 대리인에 의한 BMN 사용
 - b. BMN 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이전
 - c. BMN 활용
 - d. BMN 이전
 - e. BMN 파괴
 - f. 제거 및/또는
 - g. 기타 장관이 정하는 방식
- (2) 제(1)항 a 에 따른 사용, 제(1)항 b 호에 따른 BMN 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이전, 제(1)항 c 호에 따른 활용, 제(1)항 d 호에 따른 이전, 제(1)항 e 호에 따른 파괴, 제(1)항 f 호에 따른 제거를 통해 토지 및/또는 건물 이외의 BMN 을 정리하는 절차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 (3) 제(1)항 g 호에 따라 기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BMN 을 정리하는 절차는 본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112조

- (1) 장관에게 이전된 BMN 에 대해 보안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안 및 유지보수 비용은 APBN 에 청구되어야 한다.
- (3) 기타 당사자를 임명하여 제(1)항에 따라 BMN 에 보안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7 -

제3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이전된 BMN의 활용

제113조

- (1) BMN 활용은 재산관리자인 장관이 한다.
- (2) 장관은.
 - a. 기타 당사자를 컨설턴트·고문으로 임명하여 BMN 활용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 b. 국가나 공공 서비스 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사업체를 임명하여 BMN 활용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3) BMN 활용 협력업체는 직접 임명하거나 입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직접 임명은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5) 제(3)항에 따른 입찰은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진행한다.
- (6) BMN 활용 수익금은 다음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a. 국고로 귀속된 금전
 - b. 누산타라 수도 내 BMN 제공
 - c. 기타 장관이 정하는 방식
- (7) BMN 활용 협력업체는 활용 대상인 BMN에 대해 저당권 설정 행위, 담보권 설정 행위 및/또는 양도 행위를 할 수 없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8 -

- (8) 다른 당사자가 BMN을 활용하는 경우, 보안 및 유지보수 비용을 BMN을 활용하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14조

- (1) BMN 활용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임차
 - b. 임대
 - c. 활용협력
 - d. 민간투자사업(Build Operate Transfer)
 - e. 인프라 제공 협력 또는
 - f.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된 협력
- (2) 제(1)항 a호의 임차 형태로 BMN을 활용하는 것과 제(1)항 c호 활용협력 형태로 BMN을 활용하는 것은 본 정부 규정에 따라 한다.
- (3) 제(1)항 b호의 임대, 제(1)항 d호의 민간투자사업, 제(1)항 e호의 인프라 제공 협력, 제(1)항 f호의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된 협력에 대한 절차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115조

- (1) BMN은 기타 당사자에게 최대 30년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자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임차/임대 금액 산출 공식은 장관이 결정한다.
- (3) 임차는 계약으로서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9 -

- (4) 임차비는
 - a. 한번에 지급하거나
 - b.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5) 제(4)항 a 호에 따라 임차비를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 a. 임차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 b. 임차 상대방에게 임차비 조정 요인을 전달할 수 있다.
- (6) 제(4)항 b 호에 따라 임차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a. 임차 상대방은 총 임차비의 최소 10%를 첫 단계에 지급한다.
 - b. a 호에 따른 지급액은 임차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 c. 이후 단계의 임차비는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7) 제(6)항 c 호에 따라 단계별로 임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지급을 촉진할 수 있다.
- (8) 임차 시, 임차 상대방은 재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건물 BMN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6조

- (1) 활용협력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0 -

- a. 활용협력 상대방은 활용협력에 따른 수익 배분액(*revenue sharing*)을 국고에 지급해야 한다.
 - b. 활용협력에 따른 수익 배분액은 장관이 조직한 팀의 계산 결과로 정한다.
 - c. 활용협력 수익의 일부는 하나의 계획단위에 건축되었지만 활용협력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건물과 그 시설의 형태로 배분될 수 있다.
 - d. c 호에 따른 건물과 그 시설은 BMN 이다. 그리고
 - e. 활용협력의 기간은 계약 서명일로부터 최대 50 년이다.
- (2) 활용협력 상대방 및 활용협력 시행 비용을 확정 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활용협력 준비 비용은 활용협력 상대방에게 청구된다.
 - (3) 활용협력 상대방 및 활용협력 시행 비용을 확정 한 이후 발생하는 활용협력 준비 비용은 활용협력 시행 준비 시설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제(2)항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제4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이전된 BMN의 이전

제117조

- (1) BMN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전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1 -

- a. 교환
 - b. 매매
 - c. 증여
 - d. 중앙 정부 자본 참여
- (2) 제(1)항 a호에 따른 교환 형식의 BMN 이전 및 제(1)항 b호에 따른 매매 형식의 BMN 이전 절차는 본 정부 규정에 따른다.
- (3) 제(1)항 c호에 따른 증여 형식의 BMN 이전 및 제(1)항 d호에 따른 중앙 정부 자본 참여 형식의 BMN 이전 절차는 BMN 관리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8조

- (1) 이전되는 BMN 의 값이
- a. 100,000,000,000.00 루피아화 이하인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되어야 한다. 또는
 - b. 100,000,000,000.00 루피아화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서는 장관이 제출해야 한다.
- (3) 이전 관련 사업체 선정은 다음에 따라 할 수 있다.
- a.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의 임명 및/또는
 - b. 입찰
- (4)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물품에 대해서는 BMN 이전을 하지 않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2 -

- a. 문화 유산
- b. 역사, 과학, 교육, 종교, 문화에 있어 각별히 중요한 물건
- c. 국격을 높이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물건

제119조

- (1) BMN 교환은 다음의 자들을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
 - a.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 또는
 - b. 민간 부문
- (2) 제(1)항에 따른 교환 상대방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a.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의 임명 또는
 - b. 입찰
- (3) 다음은 교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a. 토지 및/또는 건물, 및/또는
 - b. 토지 및/또는 건물 이외의 것
- (4) 교환은 재산관리자가 한다.
- (5) 서로 교환되는 BMN 및 물건을 인도하면 이를 이전 기록 문서에 명시한다.
- (6) 제(2)항 b 호의 입찰에 관한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120조

- (1) BMN 매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로 진행된다.
- (2)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3 -

- a. BMN 이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에 매각되는 경우
- b. 특별 BMN 또는
- c. a 호 및 b 호 외에 장관이 규정하는 BMN

제121조

- (1) 제 120 조의 BMN 매매와 관련하여, 가격 결정은 조정 요인을 고려해서 한다.
- (2) 제(1)항의 가격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최저 한도이다.
 - a. 경매를 통한 매각 가격 또는
 - b. 경매를 통하지 않은 매각 가격

제122조

BMN 매각 대금은 전액이 세입으로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

제5관

다른 형태의 활용 및 이전

제123조

장관은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형태의 사용 및 이전을 규정할 수 있다.

제124조

- (1)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을 관리하는 장관은.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4 -

- a. 활용협력을 통해 다음의 자에게 관리를 이양할 수 있다.
 - 1. 재산관리에 대한 공공 서비스 기관
 - 2.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 및/또는
 - 3. 장관이 결정하는 기타 당사자
 - b. 재산관리자 하부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이 활용협력을 수행하는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은 다음을 위해 국고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 a. BMN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수행 및/또는
 - b. 관리 이양 규정에 따른 기타 당사자와의 협력
- (3) 제(1)항의 언급된 사업체 및 기타 당사자는 활용협력에 따른 수익 *뵤분액*을 국고에 지급해야 한다.

제125조

- (1)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시설 형태의 BMN 관리는 재산관리자인 장관에게 이양된다.
- (2) 제 106 조부터 제 112 조까지의 BMN 이전 규정은 제(1)항에 의한 국가시설 형태의 BMN 이전에 대해 준용한다.
- (3) 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시설 형태의 국유 자산(BMN) 관리와 관련하여, 장관은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5 -

- a. 그 자산의 사용상 지위를 다른 부처·기관에 이전하거나
- b. BMN의 활용 또는 이전을 위해 그 자산의 국가시설로서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6조

- (1) 장관은 BMN 활용 및/또는 이전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2)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한, BMN 활용 및 이전 지원은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3절

누산타라 수도 내 BMN 관리

제1관

총칙

제127조

- (1) 누산타라 수도 내 BMN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수요 계획 및 예산 편성
 - b. 조달
 - c. BMD 및 ADP 이전을 통한 BMN 취득
 - d. 이용
 - e. 활용
 - f. 보안·정비
 - g. 평가
 - h. 이동
 - i. 파괴
 - j. 제거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6 -

k. 운영 및

1. 지도, 관리·감독

- (2) 제(1)항 a 호에 따른 수요 계획 및 예산 편성, 제(1)항 c 호에 따른 BMN 및 ADP 이전을 통한 BMN 취득, 제(1)항 d 호에 따른 사용, 제(1)항 e 호에 따른 활용에 관한 절차는 본 정부 규정에 따른다.
- (3) 제(1)항 b 호에 따른 조달, 제(1)항 f 호에 따른 보안·정비, 제(1)항 g 호에 따른 평가, 제(1)항 h 호에 따른 이전, 제(1)항 i 호에 따른 파괴, 제(1)항 j 호에 따른 제거, 제(1)항 k 호에 따른 운영, 제(1)항 l 호에 따른 지도, 관리·감독에 관한 절차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2관

수요 계획 및 예산 편성

제128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BMN 수요 계획안을 마련한다.
- (2) 누산타라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이라는 맥락에서,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 상품 표준, 수요 표준 등을 고려하여 BMN 수요 계획안을 마련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7 -

- (3)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제(1)항에 따른 수요 계획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신규 수요 및 기본 수치에 대한 예산 공급을 제안하고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한다.

제129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부처·기관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품 표준 및 수요 표준을 고려하여 BMN 사용을 할당한다.
- (2) 제(1)항의 상품 표준 및 수요 표준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이 관련 기술 기관의 장과 조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관

BMD 및 ADP 이전을 통한 BMN 취득

제130조

- (1) 누산타라 수도에 위치한 BMD 는 중앙 정부로 이전된다.
- (2) 제(1)항의 BMD 이전은 BMD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증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3) 제(2)항의 BMD 이전은 적어도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 3호 제 4조 제(2)항에 따라 수도의 지위, 기능, 역할이 자카르타 특별수도권에서 누산타라 수도로 이전될 때까지는 이행되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8 -

제131조

- (1) ADP 지위는 BMN으로 이전될 수 있다.
- (2) ADP 지위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BMN으로 이전된다.

제4관
BMN 사용

제132조

- (1) 누산타라 수도 내 BMN 은 다음의 자가 사용한다.
 - a.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관리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및 토지 및/또는 건물 외의 BMN 의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
 - b. 제 104 조 제(1)항의 특정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및 토지 및/또는 건물 외의 BMN 의 경우, 제 104 조 제(1)항의 특정 부처·기관.
 - c. 기타 특정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및 토지 및/또는 건물 외의 BMN 의 경우, 기타 부처·기관.
- (2)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제(1)항 c 호의 부처·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을 제공해야 한다.
- (3) BMN 사용은 BMN 관리에 관한 법규를 따른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9 -

제133조

- (1) 누산타라 수도 내에 있는 국가시설 및 그 부지 형태의 BMN 은 1 급 국가시설 및 2 급 국가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 (2) 제(1)항의 국가시설 및 그 부지 형태의 BMN 은 이전될 수 없다.
- (3) 제(1)항의 국가시설은 3 급 국가시설로 이전될 수 없다.
- (4) 제(1)항에 따른 국가시설 형태의 BMN 에 보안과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비용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게 청구된다.
- (5) 누산타라 수도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에게는 국가시설 형태의 편의가 제공된다.
- (6) 누산타라 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에게는 국가시설 형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
- (7) 누산타라 수도로 배정된 고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이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시설 형태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고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에게는 최대 5년 간 주거·직업수당 또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 (8) 제(7)항의 수당 또는 보상은 부처·기관의 예산 집행 항목 목록에 청구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0 -

- (9) 제(6)항에 따른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에 대한 정부시설 편의 제공 및 제(7)조에 따른 주거·직업수당 또는 보상 제공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4조

중앙 정부의 핵심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은 이전될 수 없다.

제135조

누산타라 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부처·기관에 의해 발생한 BMN은, 재산관리자인 장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023년부터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 이전될 것이다.

제5관

활용

제136조

- (1) BMN 활용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임차
 - b. 임대
 - c. 활용협력
 - d. 민간투자사업(Build Operate Transfer)
 - e. 인프라 제공 협력 또는
 - f.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된 협력
- (2) 제(1)항 e 호에 따른 인프라 제공 협력에 관한 절차는 본 정부 규정에 따른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1 -

- (3) 제(1)항 a호에 따른 임차, 제(1)항 b호에 따른 임대, 제(1)항 c호에 따른 활용협력, 제(1)항 d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1)항 f호에 따른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된 협력에 관한 절차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137조

- (1) BMN에 대한 인프라 제공 협력은 토지 및/또는 건물 형태의 BMN 또는 토지 및/또는 건물 외의 BMN에 대해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인프라 제공 협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수행한다.

제138조

인프라 제공 협력은 재산관리자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초과 이득(환수금)이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얻을 수 있다.

제139조

제136조 제(1)항의 BMN 활용 형태로서 본 정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BMN 관리에 관한 법규를 따른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2 -

제6관
BMN 관리의 기타 형태

제140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의 BMN 관리 형태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141조

(2)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과 관련하여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 내 BMN 관리 및
- b. 누산타라 수도 내 BMN 관리에 관한 추가 규정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관리 대상 자산의 관리

제1절
총칙

제142조

ADP에는 다음을 통해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다.

- a. 토지관리권의 확인 및 부여
- b. 보조금, 기부금 등
- c. 계약 이행의 결과
- d. BMN 및/또는 BMD 이전
- e. 법규의 시행
- f.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원 결정의 집행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3 -

제143조

- (1) ADP는 기능적 원칙, 법적 확실성, 투명성, 효율성, 회계책임 및 가격 확실성을 기초로 하여 관리한다.
- (2) 제(1)항에 따른 ADP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계획
 - b. 할당
 - c. 사용
 - d. 활용
 - e. 보안·정비
 - f. 제거
 - g. 운영 및
 - h. 지도, 관리·감독

제2절

ADP 관리자

제144조

- (1) 장관은 ADP 관리자이다.
- (2) ADP 관리자는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a. ADP 관리에 관한 일반 정책 수립
 - b. 누산타라 수도 지역 내 토지에 대한 ADP 지위 결정
 - c. BMN 및/또는 BMD의 이전으로 획득한 자산의 ADP 지위 결정
 - d. BMN으로 이전될 자산에 대한 ADP 지위 제거 승인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4 -

- e. ADP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3) ADP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특정 책임과 권한을 ADP 사용자, ADP 사용자 대리인에게 이양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특정 책임과 권한 및 그 이전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5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ADP 사용자이다.
- (2) 제(1)항의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은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a. ADP 관리자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ADP 를 관리
 - b. 누산타라 수도 지역 내 토지에 대한 ADP 지위 결정을 ADP 관리자에게 제안
 - c. ADP 가 되기 위해 이전, 제거, 포기되는 BMN 및/또는 BMD 수령
 - d. ADP 계획 수립 준비
 - e. ADP 사용
 - f. ADP 보유자에게 ADP 할당 신청에 대한 승인 부여
 - g. ADP 관리자의 승인을 기초로 하여 ADP 사용 할당 결정
 - h. ADP 파트너에게 ADP 활용 신청에 대한 승인 부여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5 -

- i. ADP 할당, 사용, 활용 계약에 서명
 - j. ADP 에 보안 및 유지보수 제공
 - k. 누산타라 수도 당국(BMN)으로 이전될 자산에 대한 ADP 지위 제거 제안서 제출
 - l. BMN 이 되기 위해 제거된 ADP 를 재산사용자에게 이전
 - m. ADP 운영
 - n. ADP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o. ADP 사용자 대리인 임명 및/또는 배정
- (3) ADP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특정 책임과 권한을 ADP 사용자 대리인에게 이양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특정 책임과 권한 및 그 이전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규정으로 정한다.

제146조

- (1) ADP 사용자 대리인은 ADP 사용자가 임명 및/또는 배정한다.
- (2) ADP 사용자 대리인은 다음의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a. ADP 사용자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의 행사 및 책임의 이행
 - b. ADP 사용자로부터 배정 받은 업무 수행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6 -

- c. ADP 사용자로부터 이양 받은 직무, 권한, 책임의 이행 보고

제3절
ADP 계획 수립

제147조

- (1) ADP 사용자는 AD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ADP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2) 제(1)항에 따른 ADP 관리계획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 (3) ADP 관리계획에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할당, 사용 및/또는 활용할 구역에 대한 개발인
 - b. a 호에 따라 개발할 구역에 대한 지정안
- (4) ADP 사용자는 ADP 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절
ADP 할당

제1관
유형

제148조

- ADP 할당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토지 할당
 - b. 분배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7 -

- c. 토지권 부여
- d. 담보권
- e. 전환 및
- f. 포기

제2관
토지 할당

제149조

- (1) ADP 사용자는 잠재적 ADP 보유자가 요청하는 바에 기초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ADP 토지할당을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ADP 토지할당 기간은 최대 30 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ADP 토지할당 기간은 다음의 경우 30 년 이상으로 정하며 연장될 수 있다.
 - a.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 최대 50 년. 또는
 - b.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 (4) 제(3)항 a 호에 따른 특정 할당은 ADP 사용자가 결정한다.

제150조

- (1) ADP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인도네시아 국민
 - b.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 c. 외국의 대표자
 - d. 국제기구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8 -

- e. 인도네시아 내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 f. 외국인
 - g. 법률에 의한 기관 또는
 - h. ADP 사용자
- (2) 제(1)항에 따라 ADP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토지 부문 법규 조항에 따른 토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 (3) 제(1)항 c 호에 따른 외국의 대표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공식적인 대표자를 말한다.
- (4) (3) 제(3)항에 따라 외국의 대표자에게 토지를 할당하려면 반드시 외무 담당 장관의 권고가 있어야 한다.
- (5) 제(1)항 d 호에 따른 국제기구는 인도네시아가 공식 회원국인 다국가 기구를 말한다.
- (6) 제(5)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토지를 할당하려면 다음 부처·기관의 권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a. 외무 담당 부처·기관 및/또는
 - b. 상기 국제기구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기관
- (7) 제(1)항 e호에 따른 외국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인이다.
- a. 인도네시아 내에 대표자를 두고 있고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9 -

- b.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속하는 법인.
- (8) 제(1)항 f호에 따른 외국인은
- a.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속하고
 - b. 법규에 따른 허가증을 갖고 있는 자로서
 - c. 토지 할당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자로부터 권고를 받아야 한다.
 - 1. 외무 담당 장관 및
 - 2. 인도네시아로부터 기원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인도네시아 내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
- (9) 제(1)항 h 호에 따른 ADP 사용자는 ADP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ADP 보유자가 될 수 있다.

제151조

- (1) 토지 할당은 다음의 ADP 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a. 토지관리권이 발생한 ADP 및
 - b. 제 147 조 제(3)항 a 호에 따른 ADP 관리계획에 포함된 구역 내의 ADP
-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토지관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ADP 에 대해서는 정부 규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 지침을 기초로 하여 ADP 토지를 할당한다는 조건으로 사용을 할당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0 -

- (3) 토지 할당이 확정된 ADP의 경우 기존 토지 할당이 만료, 해제, 취소되기 전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신규 토지를 할당 받을 수 없다.

제152조

- (1) 제 149 조에 따른 토지 할당은 다음의 형태로 제공한다.
- a. 할당 결정 또는
 - b. 구획 할당
- (2) 제(1)항에 따른 토지 할당은 ADP 보유자가 토지 할당 부여 승인서 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ADP 사용자가 ADP 보유자에게 제공한다.
- (3) 제(1)항 a 호의 할당 결정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다.
- a. 할당 결정은 ADP 사용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내려지며
 - b. ADP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제(1)항 b 호의 구획 할당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다.
- a. 구획 할당은 제(3)항에 따른 토지 할당의 일부를 ADP 보유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는 맥락에서 부여되며
 - b. 다른 부분적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1 -

제153조

- (1) 제 149 조에 따른 ADP 토지 할당은 ADP 사용자가 결정한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ADP 보유자가 지급한 후 제공된다.
- (2) 제(1)항의 분담액은 세외 국가 수입으로서 법규에 따라 관리된다.
- (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한 분담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a. ADP 보유자가 제 150 조 제(1)항 c 호에 따른 외국 정부로서, 국가 간 합의 사항 및/또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분담액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b. ADP 보유자가 제 150 조 제(1)항 d 호에 따른 국제기구로서, 자체 규정 및/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대상 토지 사용에 대한 분담액 지급을 면제 받는 경우.
 - c. 정부 규정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분담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해진 정부 지침을 기초로 하여 ADP 토지 할당이 이뤄지는 경우.
또는
 - d. ADP 보유자가 제 150 조 제(1)항 h 호의 ADP 사용자인 경우.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2 -

제3관
ADP 지정

제154조

- (1) ADP지정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ADP지정의 세부 사항은 ADP 사용자가 결정한다.

제4관
토지권 부여

제155조

- (1) ADP 할당 이행과 관련하여, 토지지구 내 법규에 따라 ADP 토지 관리권에 대해 토지권이 부여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관리권에 대한 토지권은 ADP 사용자로부터 이미 토지 할당을 받은 토지에 대해 부여된다.
- (3) 제(1)항에 따른 관리권에 대한 토지권은 ADP 보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ADP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지구 내 법규에 따라 부여된다.
- (4) ADP 토지 할당에 대한 토지권 상의 토지에 공공 주택이 건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ADP 보유자는 해당 토지 및 공공 주택 지구 내 법규에 따라 주택 단위별 소유 증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3 -

제5관
담보권

제156조

- (1) ADP 보유자가 관리하는 토지 할당에 대해 부여된 토지권에는 법규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담보권 설정은 반드시 ADP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설정하지 못할 수 있다.
 - a. 토지 할당에 대한 토지권 부여 및
 - b. 토지 할당 부여
- (4) ADP 보유자는 담보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 이를 ADP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 (5) 담보권을 실행하는 채권자는 ADP 사용자에게 담보권 실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 (6) 제(5)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의 결과로 토지 할당이 기타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채권자는 ADP 사용자에게 토지 할당 이전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7) 제(6)항에 따라 토지 할당을 이전 받는 기타 당사자는 반드시 제 150 조 제(1)항에 따른 ADP 보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4 -

제6관
ADP 이전

제157조

- (1) ADP 토지 할당은 기타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ADP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토지 할당이 이전될 수 있다.
 - a. 유산 분배로 인한 이전
 - b.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이전
 - c. 법원의 중국적 판단에 따라 확정된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또는
 - d. 다음으로 인해 ADP 보유자의 신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1. ADP 보유자의 이름 변경 또는
 2. 법규에 따른 법인 합병
- (3) 제(2)항에 따라 토지 할당을 이전 받는 기타 당사자는 반드시 제 150 조 제(1)항에 따른 ADP 보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4) 제(2)항에 따른 토지 할당 이전은 다음의 토지에 대해 할 수 있다.
 - a. 토지권이 부여된 토지 또는
 - b. 토지권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5 -

- (5) 토지권이 부여된 토지 할당에 대해 제(1)항에 따라 토지 할당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토지권은 토지지구 내 범규에 따라 이전된다.

제7관
ADP 상실

제158조

- (1) ADP 보유자에게 부여된 토지 할당은 다음에 기반하여 상실될 수 있다.
- ADP 보유자의 신청
 - 토지 할당 폐지 또는
 - 취소
- (2) 제(1)조에 따른 토지 할당 상실은 다음에 대해 이뤄질 수 있다.
- 토지 할당의 전부 또는
 - 토지 할당의 일부

제159조

- (1) 제 158 조 제(1)항 a 호에 따라 ADP 보유자가 토지 할당 상실을 신청하는 경우, ADP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
- (2) ADP 보유자가 제 150 조 제(1)항에 따른 ADP 보유자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1 년 이내에 토지 할당을 양도하여 상실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 기타 당사자에 대한 양도 및/또는
 - ADP 사용자에게 대한 반환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6 -

- (4) 제(3)항 a호에 따른 기타 당사자에 대한 양도는 오로지 다음에 대해서만 한다.
 - a. 토지권이 부여된 토지 할당에 대해, 그리고
 - b. 제 150 조 제(1)항에 따른 ADP 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 (5) 제(3)항 b 호에 따른 ADP 사용자에게 대한 반환은 다음의 토지 할당에 대해 한다.
 - a. 토지권이 부여된 토지 또는
 - b. 토지권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
- (6) 제(3)항에 따른 토지 할당 양도는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만 한다.
- (7) 제(6)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토지 할당 양도는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한 담보권에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8) 토지권이 부여된 토지 할당에 대해 제(1)항에 따라 토지 할당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토지 할당의 토지권은 토지지구 내 법규에 따라 상실된다.
- (9) ADP 보유자가 제(7)항에 따라 토지 할당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ADP 보유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ADP 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7 -

제160조

- (1) 제 158 조 제(1)항 b 호에 따른 토지 할당 폐지로 인한 토지 할당 상실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다.
 - a. 토지 할당 기간의 만료
 - b. 계약의 이행
토지 할당 부여의 폐지 결정
 - c. ADP 보유자가 ADP 부여 승인서·결정서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 d. 법원의 종국적 판단의 집행
 - e. 기타 법규에 따른 사유
- (2) 제(1)항에 따른 폐지 형태로 토지 할당 상실은 ADP 사용자가 결정한다.
- (3) 제(1)항에 따라 폐지 형태로 토지 할당이 취소되더라도, ADP 보유자의 ADP 사용자에게 대한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4) 제(1)항에 따라 ADP 사용자가 토지 할당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토지 할당 부여로 인해 ADP 보유자가 계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5) 제(1)항에 따라 ADP 사용자가 토지 할당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ADP 보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ADP 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8 -

제161조

- (1) 제 158 조 제(1)항 c 호에서 언급한 취소로 인한 토지 할당 상실은 ADP 사용자가 결정한다.
- (2) ADP 보유자가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건설이나 개발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ADP 사용자는 할당된 ADP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취소되는 ADP에 토지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ADP 사용자는 토지지구 내 법규에 따라 권리를 폐지하기 위해 지역 토지 공무원에게 취소서를 제출한다.
- (4) 제(3)항에 따라 ADP 토지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ADP 보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ADP 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5절
ADP 사용

제162조

- (1) ADP 사용자는 지역 내 건설 및/또는 개발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ADP를 ADP사용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관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a. ADP 사용자의 직무 및 기능 수행
및/또는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9 -

- b. ADP 사용자가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업무 수행
- (3) 제(1)항에 따라 ADP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ADP 는 제 151 조에 따라 토지가 할당될 수 있는 토지이다.
- (4) 제(1)항에 따른 ADP 사용은 ADP 사용자에게 토지 할당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 (5)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관리와 관련하여, ADP 사용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a. ADP 의 건설 및/또는 개발로 인한 자산을 관리할 부서를 임명
 - b. ADP 의 건설 및/또는 개발로 인한 자산을 관리할 기타 당사자를 임명
 - c.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ADP 의 건설 및/또는 개발로 인한 자산에 대한 임차나 협력
- (6) 제(5)항에 따른 ADP 의 건설 및/또는 개발로 인한 자산은 BMN 이다.

제6절

ADP 활용

제163조

- (1) ADP활용과 관련하여, ADP 사용자는 ADP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ADP를 활용 및/또는 최적화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0 -

- (2) 제(1)항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ADP 는 제 151 조에 따라 토지가 할당될 수 있는 토지이다.
- (3) 제(1)항에 따른 ADP 활용은 ADP 사용자에게 토지 할당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 (4) 제(1)항에 따른 ADP 파트너와의 협력은 제 136 조 제(1)항에 따른 협력 형태 및/또는 ADP 사용자가 규정하는 기타 협력 형태로 할 수 있다.
- (5) ADP 활용으로 인한 자산은 계약에 따라 ADP 사용자에게 이전된 후 BMN 이 된다.

제7절

ADP 보안 및 유지보수

제1관

보안

제164조

- (1) ADP 사용자, 보유자, 파트너는 자신이 관리하는 ADP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ADP보안에는 행정적 보호, 물리적 보호 및 법적 보호가 포함된다.

제165조

- (1) 토지 형태의 ADP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명의의 권리증서가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 누산타라 수도 당국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1 -

- (2) 제(1)항에서 언급한 ADP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는 관리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발행된다.

제166조

- (1) ADP 토지에 대한 관리권 증서 및 기타 ADP 할당, 사용, 활용과 관련된 문서는 반드시 질서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 (2) ADP 토지에 대한 관리권 증서는 ADP 사용자가 보관한다.

제167조

- (1) ADP 토지에 대한 관리권에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 ADP 토지에 대한 관리권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a. 정부에 대한 청구서를 지급하기 위해 기타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b. 채무의 담보로 삼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및/또는
 - c. 권리 행사의 방해 및/또는 권리의 압류

제2관

유지보수

제168조

- (1) ADP 사용자, 보유자, 파트너는 자신이 관리하는 ADP 의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
- (2) ADP 유지보수 비용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예산에 청구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2 -

- (3) ADP가 기타 당사자에게 할당 및/또는 활용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ADP 보유자나 ADP 파트너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8절

ADP 제거

제169조

- (1) ADP 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될 수 없다.
- a. 이전되어서 국유 자산(BMN)이 되는 경우
 - b. 산림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 c. 법규의 집행과 관련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ADP 제거는 ADP 사용자가 요청하여 ADP 관리자가 승인한다.

제9절

ADP 운영

제170조

- (1) ADP 사용자는 ADP 를 운영한다.
- (2) 제(1)항에 따른 ADP 운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기록 및 등록
 - b. 목록 작성 및
 - c. 보고
- (3) ADP 사용자·ADP 사용자 대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ADP 목록을 종합하여 편찬한다.
- (4) ADP 사용자는 최소 5 년에 1 번씩 ADP 목록을 작성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3 -

- (5) ADP 사용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자료로서 ADP 보고서를 종합하여 편찬한다.
- (6) ADP 사용자는 준비한 ADP 보고서를 중앙 정부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자료로서 ADP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7) 제(5)항 및 제(6)항의 재무 보고서에서 ADP 는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설명된다.

제10절
ADP 관리·감독

제171조

ADP 관리·감독은

- a. ADP 사용자가 모니터링·조사 행위를 통해 수행하고/수행하거나
- b. ADP 관리자가 모니터링·조사 행위를 통해 수행한다.

제172조

- (1) ADP 사용자는 ADP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한다.
- (2) ADP 사용자는 정부의 내부 통제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ADP 사용자는 법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3조

ADP 사용자는 ADP 관리 담당부서에 대해 ADP 관리 부분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4 -

제174조

- (1) ADP 관리자는 법규에 따라 ADP 사용자의 ADP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통제한다.
- (2) ADP 관리자는 정부의 내부 감독 기관에게 ADP 관리 시행에 대한 후속 감사를 요청하여 제(1)항의 모니터링 및 조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감사 결과는 ADP 관리자에게 제출되어 법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175조

- (1) 부주의, 남용 또는 ADP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지역적 피해는 법규에 따른 보상 청구를 통해 해결한다.
- (2) 제(1)항의 국가적·지역적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법규에 따라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절

기타

제176조

법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자로 ADP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ADP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5 -

제177조

- (1) ADP 사용자는 다음에 대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a. 제 149 조 제(1)항에 따른 토지 할당 부여
 - b. 변경 승인서
토지 할당 지정
 - c. 연장 승인 부여
토지 할당
 - d. 제 155 조 제(3)항에서 언급한 관리권에 대한 토지권 부여 승인
 - e. 제 155 조 제(4)항에서 언급한 토지 상의 주택 소유권 증서에 대한 발급 승인
 - f. 제 156 조 제(2)항에서 언급한 관리권 상의 토지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승인 부여
 - g. 제 157 조 제(2)항에서 언급한 누산타라 수도 당국 관리 자산(ADP) 이전에 대한 승인 부여
 - h. 제 159 조 제(1)항에서 언급한 기타 당사자에게로의 토지 할당 양도에 대한 승인 부여
 - i. 제 162 조 제(1)항에서 언급한 ADP 사용과 관련하여, ADP 의 건설 및/또는 개발로 인한 자산 관리
 - j. 제 163 조 제(1)항에서 언급한 ADP 활용 관련 협력 및
 - k. ADP 관리 관련 기타 서비스 제공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6 -

제178조

(2)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ADP 계획 수립,
- b. ADP 토지 할당,
- c. ADP 사용,
- d. ADP 활용, 및
- e. ADP 보안 및 유지보수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규정에서 정한다.

제179조

(2) 추가 규정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ADP 제거,
- b. ADP 운영, 및
- c. ADP 관리·감독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7장

단계 및 이전

제180조

- (1)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늦어도 2022년 말에는 운영을 시작한다.
- (2) 각 부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을 참고하여 각자의 직무 및 기능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에 대한 준비 및 건설 활동을 수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7 -

- (3) 부처·기관이 기존에 수행하던 수도 준비 및 건설 활동은 2023 년부터 누산타라 수도 당국으로 이전되거나 혹은 부처·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 a. 계약 변경 절차는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그리고/또는
 - b. 제(3)항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 준비 및/또는 건설 활동이 이양되는 경우, 지급 및 회계책임에 관한 절차는 부처 규정에서 정한다.

제181조

본 정부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시

- a. 기타 당사자가 제 106 조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이전되는 자카르타 특별수도권 및/또는 다른 주에 위치한 BMN 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타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계약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다.
- b. 장관은 법규에 따라 a 호에 언급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8 -

제182조

- (1) 동 칼리만탄 주 지역 정부,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구 지역 정부, 북 프니잠 파세르 지구 지역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한 자카르타 특별수도권으로부터 누산타라 수도로의 수도 이전 확정일까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과 관련된 권한 및 허가를 제외한 해당 지역 내 지역 정부 업무를 법규에 따라 계속 수행한다.
- (2) 동 칼리만탄 주 지역 정부,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구 지역 정부, 북 프니잠 파세르 지구 지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도 이전 확정 시까지 지방세 및 부담금을 법규에 따라 계속하여 징수한다.
- (3) 동 칼리만탄 주 지역 정부,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구 지역 정부, 북 프니잠 파세르 지구 지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도 이전 확정 시까지 지역에 대한 이전 할당액을 법규에 따라 계속하여 수령한다.
- (4) 제(1)항에 따른 수도 이전 확정 이후에, 제(3)항에 따른 동 칼리만탄 주,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구, 북 프니잠 파세르 지구 지역에 대한 이전 할당액이 법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9 -

제8장
운영, 감독 및 평가
제1절
운영

제183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법규에 따라 적법한 출처에서 조달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운영한다.

제2절
감독 및 평가

제184조

- (1) 자금 조달 운영,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예산 관리, 그리고 BMN 운영은 감독과 평가의 대상이다.
- (2) 제(1)항에 따른 감독과 평가에는 모니터링, 감정, 통제가 포함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는 법규에 따라 부처 규정 및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규정으로 정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30 -

제9장
기타 규정

제185조

누산타라 수도에 대한 재화·서비스는 재화·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조달한다.

제186조

- (1)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에 자금을 조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법규에 따라 기관·주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개발은 BMN 및 ADP의 지위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3) 제(2)항의 토지상에 건설된 건물 및 관련 인프라 시설은 관련 국가 기관·주체의 재산으로 기록된다.

제187조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누산타라 수도 및/또는 협력 지역의 개발,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에 따라 사업체 및/또는 서비스 주체를 설립 및/또는 사용할 수 있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31 -

제188조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누산타라 수도 및/또는 협력 지역의 개발,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 관련 법규에 따라 편의 및/또는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제10장

종결 규정

제189조

본 정부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국가재정관리 및 국고에 관한 모든 법규와 그 하위 규정은 본 정부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함을 선언한다.

제190조

본 정부 규정은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32 -

본 정부 규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하여 만인이 알 수 있게 할 것을 명령한다.

2022년 4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서명

JOKO WIDODO

2022년 4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및 인권부 장관

서명

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22년 제101호

사본은 원본과 동일함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무부
입법 및 법률 행정
담당 차관



Lydia Silvanra Djam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
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2022년 제17호

해설서

1. 총칙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3호는 누산타라라는 명칭의 수도에 대해 규정한다. 누산타라 수도는 판차실라의 이념과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지속가능 도시로서 인도네시아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나타내도록 건설·운영되는 국제 도시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3호에서, 누산타라 수도는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의 수도로 수립되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를 운영하는 부처 수준의 기관으로 설립된다.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누산타라 수도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예산 사용자이자 물품 사용자의 역할을 한다.

누산타라 수도의 자금 계획은 APBN 및 기타 적법한 출처에서 조달될 수 있다. 기타 적법한 출처에는 BMN 이용 및/또는 ADP 이용, 정부·사업체 협동 계획 이용, 및 기타 당사자의 참여가 포함된다. 기타 당사자의 참여에는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의 배치, 국유 법인의 역할 강화 및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이 포함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 -

나아가, 자금 조달 계획의 자금처에는 법규에 따른 기타 적법한 출처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규정하는 민간 기부금,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 및 IKN 특별세 및/또는 IKN 특별비가 포함된다.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자금은 법규에 따라 APBN 및/또는 기타 적법한 출처에서 조달된다. 예산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 및/또는 중기개발계획을 참고하여, APBN 및/또는 기타 적법한 자금처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에 따라 할당한다.

법규에 따라 APBN 및/또는 기타 적법한 출처에서 조달하는 자금 계획은 올바른 공동 통치(*good corporate governance*)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운영한다.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3호의 여러 위임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상기의 고려 사항들을 유념하여,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행정부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조항별 해설

제1조

충분히 명확함.

제2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 -

제3조

충분히 명확함.

제4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a호

1

충분히 명확함.

2

정부·사업체 협동 계획은 인프라 제공 사업체와 정부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는 법규에 따라 이용한다.

3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란 국영 기업을 말한다.

b)호

충분히 명확함.

c)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 -

제(6)항

충분히 명확함.

제(7)항

충분히 명확함.

제(8)항

창조적 자금 조달(*creative financing*)에 대한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제(9)항

지원은 국영 기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제(10)항

충분히 명확함.

제(11)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충분히 명확함.

c호

국영 기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사업체가 누산타라 수도 당국과 협력하는 경우, 누산타라 수도 당국은 피보증 당사자의 역할을 한다.

d호

충분히 명확함.

제(12)항

충분히 명확함.

제5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5 -

제(2)항

본 정부 규정에서, “법규”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으로서, APBN 논의 시 최대 순 채권 금융액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에 준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재정 건전성 고려”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b호

본 정부 규정에서, “관련 법규”란 APBN에 관해 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제7조

충분히 명확함.

제8조

제(1)항

본 정부 규정에서, “세외 국가수입”이란 국가가 보유하는 자원 및 권리를 이용·활용하여 직간접적 혜택을 얻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는 중앙 정부에게 세외 수입과 보조금 수령이 되며 법규상의 APBN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6 -

- 제(3)항
충분히 명확함.
- 제(4)항
충분히 명확함.
- 제(5)항
충분히 명확함.
- 제(6)항
충분히 명확함.
- 제(7)항
충분히 명확함.
- 제(8)항
충분히 명확함.
- 제(9)항
충분히 명확함.
- 제(10)항
충분히 명확함.

제9조
충분히 명확함.

제10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본 정부 규정에서, “신규 사업·활동”이란 현 회계연도의 APBN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업·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는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에 따른다. 본 조항은 기타 자금 출처에 준용된다.

제(3)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7 -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충분히 명확함.

제(6)항
충분히 명확함.

제11조

제(1)항
본 정부 규정에서, “지방 자금 조달”은 누산타라 수도 외의 지방 정부가 하는 자금 조달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기타 자금 출처”는 법규에 따라 가능한 모든 자금처를 말한다.

제(2)항
SBSN(국가 샤리아 증권) 포워딩은 정부가 법규에 따라 지방 대출을 하거나, 국영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또는 장관이 정부 투자 운영자로 임명한 국영 기업을 통해 정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방 정부에 대해 직접 할 수 있다.

국영 기업에 대한 SBSN 포워딩에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지도하는 국영 기업에 대한 SBSN 포워딩이 포함된다.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충분히 명확함.

제(6)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8 -

제12조

충분히 명확함.

제13조

충분히 명확함.

제14조

충분히 명확함.

제15조

충분히 명확함.

제16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본 항의 규정은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3호 제36조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수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3호 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준비 및 건설 활동은 2023년부터 누산타라 수도 당국으로 이전되거나 혹은 부처·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17조

충분히 명확함.

제18조

충분히 명확함.

제19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9 -

제20조

충분히 명확함.

제21조

충분히 명확함.

제22조

충분히 명확함.

제23조

충분히 명확함.

제24조

충분히 명확함.

제25조

충분히 명확함.

제26조

충분히 명확함.

제27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시행 사업체가 PJK에게 제공하는 인프라 건설의 공정가치는 시행 사업체가 발생시킨 건설비 및 건설 기간동안 투자될 수 있는 기타 금융 비용의 교환 가치이다. 본 공정가치는 PJK와 시행 사업체 사이에서 교환되는 보상 유형에 반영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0 -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28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본 정부 규정에서, “자산”이란 시행 사업체의 인프라 제공으로 인한 자산 및 (존재하는 경우)인프라 제공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BMN을 말한다.

제29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충분히 명확함.

c호
기타 형태는 본 정부 규정 제13조와 제14조에서 언급한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의 목적 및 원칙에 따른다.
기타 형태를 통한 투자 수익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

충분히 명확함.

제31조

충분히 명확함.

제32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1 -

제33조

충분히 명확함.

제34조

충분히 명확함.

제35조

충분히 명확함.

제36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개시 사업체가 PJKP에게 제출하는 타당성 연구 및 지원 문서는 PJKP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PJKP가 타당성 연구 및 지원 문서에 내용 추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 개시 사업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제37조

충분히 명확함.

제38조

충분히 명확함.

제39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2 -

제40조

충분히 명확함.

제41조

본 조항의 인프라 자금 공급에는 정부·사업체 간 협력(KPBU IKN) 외의 다른 방식이 포함된다.

제42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본 정부 규정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은 승인하도록 지정 받았거나 승인 권한이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자동차세”란 법규에 따라 자동차류를 소유·관리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자동차”란 특정 에너지 자원을 해당 차량의 동력으로 변환하는 모터 또는 기타 장비 형태의 기술적 장치로 구동되는 모든 형태의 육상 및 수상 차량과 그 트레일러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3 -

b호

본 정부 규정에서, “차량 명의 이전세”란 법규에 따라 두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행위, 또는 사업체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유입의 결과로 차량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c호

본 정부 규정에서, “중장비세”란 법규에 따라 중장비를 소유·관리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중장비”란 성질상 사람이 작업하기 고된 건설공사 및 그 밖의 토목공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로, 바퀴가 있든 없든 모터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영구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 현장, 농지, 임지, 광산 등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d호

본 정부 규정에서, “자동차연료세”란 법규에 따라 자동차류 및 중장비의 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자동차 연료”란 자동차 및 중장비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액체·가스 연료를 말한다.

e호

본 정부 규정에서, “지표수세”란 법규에 따라 지표수를 추출 및/또는 활용하는 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지표수”란 지표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을 말한다.

f호

본 정부 규정에서, “담배세”란 법규정에 따라 정부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4 -

g호

본 정부 규정에서,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축세”란 법규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관리 및/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육지”란 토지와 내수면이 포함된 육지를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건물”이란 지표면 위나 아래에 영구히 설치되거나 부착되어 있는 기술적 건축물을 말한다.

h호

본 정부 규정에서,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란 법규에 따라 토지 및/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 취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 및/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나 법적 사건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로서 관리권을 포함한다.

i호

본 정부 규정에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세”란 특정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및/또는 전달되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1

본 정부 규정에서, “식음료”란 직간접적으로, 또는 식당의 주문을 통해 제공, 판매 및/또는 전달되는 음식 및/또는 음료를 말한다.

식당은 요금을 받고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5 -

2

본 정부 규정에서, “전력”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힘 또는 에너지로서 다양한 전기 장비에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3

본 정부 규정에서, “접객 서비스”란 식음료 서비스, 오락 활동 및/또는 기타 시설로 보완되는 숙박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4

본 정부 규정에서, “주차 서비스”란 주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든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든 관계 없이, 노외 주차공간을 제공·운영하는 서비스 및/또는 차량을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차량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5

본 정부 규정에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란 즐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쇼, 공연, 게임, 재주, 레크리에이션 및/또는 군중을 제공하거나 조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j호

본 정부 규정에서, “광고세”란 법규에 따라 광고 운영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광고”란 상업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소개, 장려, 홍보하거나 무언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형태와 패턴의 물건, 도구, 행위 또는 미디어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6 -

k호

본 정부 규정에서, “지하수세”란 법규에 따라 지하수를 추출 및/또는 활용하는 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의 토양 또는 암석 층에 위치한 물을 말한다.

l호

본 정부 규정에서, “비금속 암석 광물세”란 활용할 목적으로 법규에 따라 지표면 내 천연 자원으로부터 비금속 암석 광물을 추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비금속 암석 광물”이란 광물 및 석탄 관련 법규에 따른 비금속 암석 광물을 말한다.

m호

본 정부 규정에서, “제비집세”란 법규에 따라 제비집을 채취 및/또는 관리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제비”란 *collocalia genus*에 속하는 동물로서, 즉 *Collocalia fuchliap haga*, *Collocalia maxina*, *Collocalia esculanta*, 및 *Collocalia linchi*을 말한다.

제44조

충분히 명확함.

제45조

충분히 명확함.

제46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7 -

제47조

충분히 명확함.

제48조

충분히 명확함.

제49조

충분히 명확함.

제50조

충분히 명확함.

제51조

충분히 명확함.

제52조

충분히 명확함.

제53조

충분히 명확함.

제54조

충분히 명확함.

제55조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비금속 암석 광물의 추출 활동”에는 법규에 따라 석면, 집판암, 반원석, 석회석, 경석, 원석, 벤토나이트, 백운석, 장석, 암염 (*halite*), 흑연, 화강암/안산암, 석고, 카올린, 백류석, 마그네사이트, 운모, 대리석, 질산염, 흑요석, 황토, 모래 및 자갈, 규사, 펄라이트, 인산염, 활석, 흡수성 흙 (*낙토*), 규조토, 점토, 명반 (*알루미눔*), 트라스, 야로사이트, 제올라이트, 현무암, 트라하이트, 유황, 광산 관련 광물, 및 비금속 암석 광물이 포함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8 -

- b호 충분히 명확함.
- c호 충분히 명확함.
- d호 충분히 명확함.

제56조
충분히 명확함.

- 제57조
- 제(1)항 국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및 부처장은 준용되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법규에 따르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 제(2)항 충분히 명확함.
 - 제(3)항 충분히 명확함.
 - 제(4)항
 -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불충분한 잠재성”이란 징수 비용이 징수 결과보다 클 정도로 가치가 너무 작은 종류의 세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 b호 충분히 명확함.

제58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19 -

제(2)항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공공 서비스”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이 공공의 이익과 혜택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호

본 정부 규정에서,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제공”이란 누산타라 수도 당국에서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추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c호

본 정부 규정에서, “특정 허가”란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특정 활동으로서, 공간을 활용하거나, 천연자원, 상품, 인프라, 시설,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지도, 규제, 통제, 감독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59조

충분히 명확함.

제60조

충분히 명확함.

제61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0 -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규정의 규제 자료에는 지방세 및 지방 부담금 관련 법규가 고려된다.

제62조

충분히 명확함.

제63조

충분히 명확함.

제64조

충분히 명확함.

제65조

제(1)항

a호

보조금 수령에는 외국을 출처로 하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본 조항의 보조금은 해외 대출 조달 및 보조금 수령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이다.

b호

대출 조달에는 국내외를 출처로 하는 대출 조달이 포함된다.

본 조항의 대출은 해외 대출 조달 및 보조금 수령 절차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내 대출 조달 및 포워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출이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1 -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본 정부 규정에서, “법규”란 해외 대출 조달 및 보조금 수령 절차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내 대출 조달 및 포워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6조

충분히 명확함.

제67조

충분히 명확함.

제68조

충분히 명확함.

제69조

충분히 명확함.

제70조

충분히 명확함.

제71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2 -

제(6)항

충분히 명확함.

제(7)항

충분히 명확함.

제(8)항

내부 감독 기관은 누산타라의 업무 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여 누산타라 수도의 업무 계획 및 예산안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한다.

제72조

협력은 회의나 심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3조

충분히 명확함.

제74조

충분히 명확함.

제75조

충분히 명확함.

제76조

충분히 명확함.

제77조

충분히 명확함.

제78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3 -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권한의 위임은 예산사용자 대리인(KPA)의 임명과 동시에 확정된다.

제79조

충분히 명확함.

제80조

충분히 명확함.

제81조

충분히 명확함.

제82조

제(1)항

세입 회계담당자의 임명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기준 충족 여부는 재무 장관의 기능적 지위를 수탁받은 재무관이 판단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83조

충분히 명확함.

제84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4 -

제85조

제(1)항

세출 회계담당자의 임명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기준 충족 여부는 재무 장관의 기능적 지위를 수탁받은 재무관이 판단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86조

충분히 명확함.

제87조

충분히 명확함.

제88조

충분히 명확함.

제89조

충분히 명확함.

제90조

제(1)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충분히 명확함.

c호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5 -

d호

충분히 명확함.

e호

본 정부 규정에서, “법규에 따른 누산타라 수도의 기타 적법한 세입”에는 세외 국가수입이 포함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91조

국가 세입 시스템은 모든 국가 세입 거래를 관장하는 장관이 시행한다.

제92조

제(1)항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계획 보조금”이란 계획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b호

본 정부 규정에서, “직접 보조금”이란 계획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6 -

제93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최대 지출 공식(MP)을 통해 산출된 세외 수입금 지출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세외 국가 수입금의 잔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 잔액은 법규에 따라 여전히 지출할 수 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집행 항목 목록의 접수를 기다려야 한다.

제94조

충분히 명확함.

제95조

충분히 명확함.

제96조

예산 집행 및 회계책임에 대한 내부 통제는 내부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하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 기관이 수행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7 -

제97조

예산 집행에 포함되는 세출 집행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재원투입 이행
2. 국가에 대한 청구서 결제
3. 재원투입 운영
4. 연체금 결제 및
5. 환불금 지급

본 정부 규정에서, “APBN의 집행 및 회계책임에 관한 법규”에는 위법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로서 국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상황을 규제하는 재무 부문 법규가 포함된다.

재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절차에 관한 법규는 본 정부 규정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준용된다.

제98조

충분히 명확함.

제99조

충분히 명확함.

제100조

충분히 명확함.

제101조

충분히 명확함.

제102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8 -

제103조

충분히 명확함.

제104조

제(1)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직무 및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누산타라 내 BMN에 대한 재산사용자가 될 수 있는 부처장/기관장은 선별적으로 결정한다.
본 조항에 포함된 기관은 국가의 상급 기관이다.

c호

충분히 명확함.

d호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105조

충분히 명확함.

제106조

충분히 명확함.

제107조

충분히 명확함.

제108조

충분히 명확함.

제109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29 -

제110조

충분히 명확함.

제111조

충분히 명확함.

제112조

충분히 명확함.

제113조

충분히 명확함.

제114조

충분히 명확함.

제115조

충분히 명확함.

제116조

충분히 명확함.

제117조

충분히 명확함.

제118조

충분히 명확함.

제119조

충분히 명확함.

제120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0 -

제(2)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특별 BMN”에는 법규에 따라 특별히 규제되는 물건이 포함된다.

c호

충분히 명확함.

제121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한계 액수”란 경매될 물건의 최저 가격을 말한다.

b호

충분히 명확함.

제122조

충분히 명확함.

제123조

충분히 명확함.

제124조

충분히 명확함.

제125조

제(1)항

본 정부 규정에서, “국가시설”이란 거주지나 주거지로 지정되어 고위 공무원 및/또는 국가 기관의 직무 집행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BMN을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1 -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a호

관련 부처·기관이 여전히 국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시설 형태의 BMN은 다른 부처·기관에 이전되지 않는다.

b호

충분히 명확함.

제126조

충분히 명확함.

제127조

충분히 명확함.

제128조

충분히 명확함.

제129조

충분히 명확함.

제130조

제(1)항

중앙 정부로의 BMN 이전은 지방 정부에서 누산타라 수도 당국 및/또는 예산사용자/재산사용자로서의 부처/기관으로 옮겨진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2 -

제131조

충분히 명확함.

제132조

충분히 명확함.

제133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5)항

충분히 명확함.

제(6)항

충분히 명확함.

제(7)항

수당 또는 보상은 국가 주거 시설 제공의 대체와 관계된 수당 또는 보상이다.

고위 공무원,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의 명명법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에서 정하는 명명법을 따른다.

고위 공무원, 공무원, 인도네시아 국군(TNI) 군인, 인도네시아 경찰 대원의 전임은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및 누산타라 수도 종합 계획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다.

제(8)항

충분히 명확함.

제(9)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3 -

제134조
충분히 명확함.

제135조
충분히 명확함.

제136조
충분히 명확함.

제137조
충분히 명확함.

제138조
충분히 명확함.

제139조
BMN 활용 형태는 임차, 임대, 활용, 협력, 민간투자사업,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제한된 협력, 또는 BMN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른 기타 형태의 BMN 활용 형태를 따른다.

제140조
충분히 명확함.

제141조
충분히 명확함.

제142조
충분히 명확함.

제143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4 -

제144조

충분히 명확함.

제145조

충분히 명확함.

제146조

충분히 명확함.

제147조

충분히 명확함.

제148조

충분히 명확함.

제149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a호

본 정부 규정에서, “특별 지정”이란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 운영을 지원하지 위한 지정을 말한다.

b호

충분히 명확함.

제(4)항

충분히 명확함.

제150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5 -

제151조
충분히 명확함.

제152조
충분히 명확함.

제153조
충분히 명확함.

제154조
충분히 명확함.

제155조
충분히 명확함.

제156조
충분히 명확함.

제157조
충분히 명확함.

제158조
충분히 명확함.

제159조
충분히 명확함.

제160조
충분히 명확함.

제161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6 -

제162조

충분히 명확함.

제163조

충분히 명확함.

제164조

충분히 명확함.

제165조

충분히 명확함.

제166조

충분히 명확함.

제167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a호

충분히 명확함.

b호

충분히 명확함.

c호

어떠한 자도 ADP 및/또는 ADP 토지 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 행사의 방해 및/또는 권리의 압류를 할 수 없다.

제168조

충분히 명확함.

제169조

충분히 명확함.

제170조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7 -

제171조

충분히 명확함.

제172조

충분히 명확함.

제173조

충분히 명확함.

제174조

충분히 명확함.

제175조

충분히 명확함.

제176조

충분히 명확함.

제177조

충분히 명확함.

제178조

충분히 명확함.

제179조

충분히 명확함.

제180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제(2)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8 -

제(3)항

본 정부 규정에서, “부처·기관이 기존에 수행하던 수도 준비 및 건설 활동”이란 부처·기관이 수년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기타 당사자와 협력하여 2023년 이전에 수행하던 수도 준비 및 건설 활동을 말한다.

해당 부처·기관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기관은 2023년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4)항

a호

규제 규정에는 약속 기록, 합의, 계약, 청구서 결제, 예산안 개정, 자산(BMN) 이전, 계약에 따른 건설, 의무 및 재무 보고가 포함된다.

b호

충분히 명확함.

제181조

충분히 명확함.

제182조

충분히 명확함.

제183조

충분히 명확함.

제184조

제(1)항

충분히 명확함.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39 -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부처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에는 재무 장관의 기관인 정부의 내부 감독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 절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누산타라 수도 당국 국장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 자료에는 누산타라 수도 당국의 기관인 정부의 내부 감독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 절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제185조

충분히 명확함.

제186조

제(1)항

본 정부 규정에서, “예산 관리”란 회계 방침, 재화 및 서비스 조달, 및/또는 관련 자산 관리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 제거 및 회계책임을 말한다.

기관·주체에는 인도네시아 은행(Bank Indonesia)이 포함된다.

제(2)항

충분히 명확함.

제(3)항

충분히 명확함.

제187조

본 정부 규정에서, “사업체”란 국영 기업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서비스 기관”이란 공공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본 정부 규정에서, “법규”란 국가 재정, 재무 및/또는 국영 기업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PRESIDEN
REPUBLIK INDONESIA

- 40 -

제188조

본 정부 규정에서, “편의 및/또는 재정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수도의 준비, 건설 이전 및 누산타라 및/또는 협력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조세 법규에 따라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편익으로서, 다음의 것.
 1. 조세 관련 법규에 따라 선도적 업계에 신규 투자를 하는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형태의 편의 및/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및/또는
 2. 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
- b. 특히 누산타라 특별 행정 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 및 지방부담금에 관한 법규에 따른 재정 지원 또는 IKN 특별세 편의.

제189조

충분히 명확함.

제190조

충분히 명확함.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6789호